

차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LawSCHOOL

2015. JUL + AUG



07/08

특별부록: 우리들의 희망, 로스쿨



- 강원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고려대학교
- 동아대학교
- 부산대학교
- 세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아주대학교
- 연세대학교
- 영남대학교
- 원광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제주대학교
- 중앙대학교
- 송남대학교
- 한경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 prologue

마하트마 간디
(1869-1948)

행복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온다.



LawSCHOOL **차** **오**

미래의 희망 로스쿨

2015
07 + 08



발행일 2015년 7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신영호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박소희 주임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모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 04 **로스쿨 탐방**
오수근 원장과 함께 한 이화여자대학교
- 08 **로스쿨 생활백서**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 12 **행복 로스쿨**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이지승 학생 인터뷰
- 14 **파워인터뷰**
금융감독원 정유희 변호사
- 18 **로스쿨 오피니언**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24 **아고라 광장 / 등록금 · 장학금 파헤치기**
- 32 **SPECIAL REPORT**
로스쿨, 어디까지 가봤니?
- 36 **로스쿨 특파원**
about the lawschool_ 인하대 박성태
about the world_ 부산대 윤성보
- 40 **명예기자 2기 소개**
- 42 **특별기고**
재단법인 동천 김차연 변호사
- 45 **로스쿨 핫이슈**
- 46 **그림 읽어주는 변호사**
- 50 **툭아보기 / 문화가 산책 / 협의회 소식**
- 55 **LAW 날말퀴즈 / OUT CAMPUS**
- 57 **특별부록**
우리들의 희망, 로스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로비에는 '법을 통해 사람을 섬긴다'는 뜻의 커다란 편액이 걸려있다. 자신의 입신양명보다는 사람을 위한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화인들의 반듯한 마음이 담긴 것이다. editor. 박소희

사람을 섬기는 법조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양성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오수근 원장 인터뷰



Q.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대해 자평을 한다면?

A.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여성교육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우리나라 남녀공학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여학생에게 요구되는 것도 남학생과는 다르다. 그러다보니 남녀공학에서는 여학생들의 역량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남녀의 차이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학습하기 때문에 여학생으로서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특히 이화 로스쿨은 학생들이 다양하고 섬세한 기대를 미리 충족하는 전통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여성 법학도가 행복한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다.

Q. 교육철학과 목표는 무엇인가?

A. 법학관 로비 벽면에 이법위인(以法爲人)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큰 편액이 걸려 있는데, 이는 법을 통해 사람을 섬긴다는 뜻이다.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궁극의 목표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는 이화 로스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로 지내온 여성을 교육해서 여성의 인간화를 이루겠다는 이화 교육 목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Q. 글로벌 여성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A. 리더십은 더불어 살면서 배우게 된다. 학생들이 시험공부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동아리 활동, 학교의 브로슈어 제작, 외국 유학생 도우미, 후배 학생들의 멘토와 튜터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향후 법률가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화는 좀 더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확립된 공정함, 공사의 구분, 단정한 품격, 문화에 대한 개방성 등 좋은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는 대학과가 설치된 1910년부터 강의를 영어로 진행했다. 그런 전통 때문인지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능

력은 대단히 탁월하다. 이러한 언어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매 학기 영어 강의를 7-8개 개설하고 있으며, 외국대학에서의 수학을 적극 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Cornell Law School이 매년 2명씩 이화 로스쿨이 지명하는 학생을 LL.M 과정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최근의 두드러진 현상은 본격적으로 외국학생들이 로스쿨에 교환학생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이다. 이번 학기에는 이탈리아 학생 3명, 스위스와 홍콩 학생 각 1명이 교환학생으로 와서 강의를 들었고 다음 학기에는 미국 학생 3명, 이탈리아와 스위스 학생이 각 1명 수학할 예정이다. 종래 아웃 바운드 학생 위주의 국제교류에서 인바운드 학생들이 오면서 국제교류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 법을 영어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법에 대한 영어강의를 매 학기 2개씩 개설할 예정이다.

Q. 재학생의 80%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

A. 정확히는 재학생의 83%가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학교 본부와 재단의 지원으로 등록금의 42%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학생수로는 300명 중 250명 정도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학기부터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등록금 외에 생활비도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가계의 형편은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우리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은 비슷하게 조성하고자 한다. 등록금과 최소한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할 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노력 중이다.

Q. 젠더법, 생명의료법을 특성화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성화와 연관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A. 1886년 이화가 설립된 이래 여성의 인간화는 학교 교육의 이념이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젠더법 연구가 진행됐다. 생명의료법은 생명이 갖는 가치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고, 나아가 생명의료산업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특성화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Q. 얼마 전 로스쿨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고 들었다. 어떤 목표를 갖고 설립된 특별위원회인가?

A.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설립됐다. 첫째는 제도로서의 로스쿨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것이고, 둘째는 로스쿨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로스쿨이 설립된지 7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로스쿨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과거 사법시험의 향수에 젖어 있는 이들도 있고, 신림동 고시촌도 옛날을 그리워하고 있다. 특히 법률서비스 공급을 독점하면서 경쟁 없이 독자적인 이익을 누리던 이들은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양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합격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 그런 시도들에 맞서서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목적이다.

	젠더법	생명의료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 '젠더법 연구소'를 설립해 우리나라의 젠더와 법의 문제를 연구 젠더법 현안와 양성평등 의지를 담은 논문집 <이화젠더법학> 연2회 발간 '여성법률상담센터'를 설립하여 이혼, 성희롱, 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생명의료법연구소' 설립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활동하면서 현재의 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기초가 됨 201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내고 있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젠더법학, 젠더법학 클리닉, 인권과 젠더, 생명과학과 젠더와 같은 과목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생명윤리법, 바이오법의 세트랙을 설정하여 교육 생명의료법 전공자들은 의료전문 검사,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식약처 등에 취업하여 전문 법조인의 역할 수행



Q. 일각에서는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정한 기회는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객관적인 여러 데이터를 보면 사법시험이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다. 사법시험이 시행되던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 가난한 학생이 7년간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사법시험은 합격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이다. 1차 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자가 지난 50년간 2.94%였다. 정말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그런 낮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가난한 학생이 고시에 합격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한 번에 바꾸는 일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는 자주 등장하지만 현실에서 거의 생각할 수 없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험 준비하던 학생들의 대부분은 검정고시 출신이 아니고 유명 대학 학생들이었다. 오죽하면 신림동 옆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총장이 신림동 고시촌을 실리콘 벨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다는 탄식을 했겠나. 서울대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

시 공부에 매달리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을 하니 마치 구두 닦는 청년이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을 연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Q. 최근 대한변협 측에서는 예비시험 제도가 있는 일본,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역시 사시와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만들어지는 것인데 사법시험을 준치 주장은 로스쿨의 도입 배경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과 다르다.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아닌 시험을 통한 선발의 폐해를 막고자 도입됐다. 사회의 모든 전문가가 교육과 실무경력을 통해서 양성이 되고 있는데, 법률가

만은 시험으로 충분하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루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한 번의 시험으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한탕주의나 다르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제도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영국에는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Training Contract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교육을 받아 변호사가 되는 전통적인 경로 외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수년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그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건축사를 20년 한 사람은 건축법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다. 경로의 다양화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Q. 한 로스쿨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

A. 첫 번째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평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학업이 뒤쳐진 것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본인들도 자존감을 잃게 되어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적성이나 역량에 맞지 않는 학생이 진로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경로로 나아가기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법학연구자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는 법학 연구자도 로스쿨 체제에서 배출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에 관한 사회적·제도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학문후속세대가 일시적으로라도 단절될까 염려하고 있다. 지금은 정보 전달 수준에 머물러있는 컴퓨터가 법의 로직을 배우게 된다면, 단순한 문서 정리나 검색을 넘어서서 직접 법적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법률가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법률가의 어떻게 법률서비스제공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숙제이다.

Q.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인가?

A. 앞서 이화 법전원의 교육이념이 법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념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발전계획이 될 것이다. 교육기관으로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문성, 과학기술의 진보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학습능력,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소통능력, 그리고 공익마인드를 배양하는 것이다.

연구기관으로서 교수 각자의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학술활동을 권장하여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포럼을 운영하고 학술지를 발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Q.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A. 법률가가 되기만 하면 자신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법률가가 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법률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법률가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법률가를 말한다. 그런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역량이 중요하다. 좋은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달리기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좋은 법률가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은 독해력, 표현력, 사고력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창**



국내대회 우승으로도 부족해 세계 법학도들의 경쟁에서도 당당하게 4위를 거머쥐고 돌아온 대한민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Advocacy' 팀이 바로 그 주인공! 그들에게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에 대해 들어봤다.

editor. 박소희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의 모든 것!

Q.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는 어떤 대회인가?

▶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는 Willem C. Vis Moot Competition (홍콩, 비엔나 개최)의 출제사안 및 절차를 그대로 사용하여 개최되는 국제 상사 분쟁사안에 대해 팀별 구두변론 기량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참가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생, 법과대학생, 대학원 법학 전공생 또는 사법연수생입니다.

Q. 대회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나?

A. 서면 심사를 통과한 민사, 형사 분야의 각 36개 팀(6개 팀씩 6개조로 편성됨)이 본선을 치르고, 그 중 각조의 1위인 6개 팀이 다시 결선을 치르는 프로세스입니다.

참가신청	올해의 경우 2014. 11. 28. 낮 12시까지, 이메일로 신청.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국제상사중재 및 대회 관련 유인물 배포 및 간략한 설명.
서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memoranda를 동시 제출 (올해의 경우, 2015. 01. 23. 낮 12시까지). · 두 서면을 기한 내에 동시 제출한 팀에 한해 구두변론대회에 초대됨. · 올 해는 11개 팀이 서면 제출.
구두 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간의 구두변론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하루 동안(2월 14일)진행. · 구두 변론은 영어로 진행하며, 각 팀당 2인만이 한 라운드의 구두 변론을 담당. 이에 참가하지 않는 팀원이 위 2인을 메모의 전달 또는 팀원 간의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 도울 수 있음. · 매 라운드는 각 60분간 진행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각 30분 범위 내에서 중재판정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한 구두 변론 진행 가능. · 변론의 진행방식은 양 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중재판정부가 재량으로 결정. 관할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신청인 순서로, 실체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순서로 진행되는 방법 등이 가능. · 11개 팀이 각 5개 팀, 6개 팀으로 무작위 편성되어 조별 예선 라운드 진행. (각 팀에게 두 번씩의 기회 부여. 각 팀 당 한 번씩 신청인, 피신청인의 구두변론 역할을 맡음.) · 예선에서는 각 팀 2명의 oralist 점수를 합산하여 그 팀의 점수 부여. 동일 점수를 받은 복수의 팀이 나올 시 서면 점수가 평가에 반영됨. · 8강부터는 oralist 별로 점수를 매기지 않고, 어느 팀이 승리팀 인지만을 결정.

Q. 상(常)의 종류와 수상 시 어떤 혜택은?

〈국내 대회 – 제5회 모의국제상사중재대회 시상 내역〉

구분	인원	상	수여	트로피 & 상장	
팀별	결승	1팀	Winner	산업통상부장관상	트로피 & 팀원명 종이 상장
		2팀	Runner-up	대한변호사협회장상	
	4강	1팀	Semi-Finalist	대한상사중재위원장상	
		1팀	Semi-Finalist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 (De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2팀	Best Teamplay		
서면	1팀	Best Submission (Respondent)	국제거래법학회장상	트로피 & 팀원명 종이 상장	
		Submission of High quality (Respondent)			
개인별	결승	1명	Best orator	국제중재실무회장상	트로피 & 개인명 종이 상장
	4강	2명	Best orator		
	8강	4명	Best orator		

〈세계대회 – Moot Shanghai 2015 시상 내역〉

구분	수여	트로피 & 상장
팀별	1팀	Champion
	1팀	Runner-up
	2팀	Semi-Finalists
	4팀	Quarter-Finalists
개인별	1명	Best Oralist
	1명	Runner-up
	1명	2nd Runner-up
	수명	Honorable Mention

Q. 팀원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A. 국제상사중재대회는 언어능력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들을 수소문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저희 팀 'Advocacy'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5기 이성규, 박예은, 6기 진경훈, 김누리, 이정인, 안정현, 최유진, 이재욱, 7기 심수민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Q.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의 우승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해 모의 국제상사중재 모의재판대회에서도 4위를 기록했다고 들었다. 세계대회 준비과정을 알려 달라.

A. 세계대회 준비과정은 주로 코칭을 받고, 연습시합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스크립트와 논



〈세계대회 – Moot Shanghai 2015〉

거들은 국내대회 준비과정에서 대부분 준비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고 심화 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대회가 끝나고 국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우선 국내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당시 심사위원으로 오셨던 변호사님들께 연락을 드려 저희 팀 코칭을 부탁 드렸습니다. 김연장, 세종, 태평양, 화우 등 국내 최고의 로펌의 변호사님들께서 흔쾌히 저희의 중재 session을 봐주셨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 타 대학 로스쿨 팀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팀 중 서울대 로스쿨팀 및 연세대 로스쿨팀과 국내 대회 때부터의 연을 이어 상해에 가기 전에 실제 경기와 똑같이 중재 session을 갖기도 하고 서로 논거를 비교 검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논거가 심화 될 수 있었습니다.

Q.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A. 크게는 CISG, UCP600 등의 국제거래법 공부부터, 작게는 데이터베이스의 검색방법을 공부하는 것 까지 크고 작게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팀원 간에 관련 지식수준의 차이가 심할수록 문제해결도 더디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팀원 모두가 스터디를 한다는 느낌으로 필요한 공부들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의 특성상 파트를 나누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심화하여 준비하게 되다보니, 다른 팀원의 파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동료가 한 작업을 그대로 신뢰 할 수 있어야만 다양한 자료를 팀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대회를 준비하면서 봉착한 난관이나,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는지?

A. 모의 국제 상사 중재대회의 문제는 복잡한 사실관계와 이슈들을 다루면서 상사 분야와 관련된 법률 관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분석하고 정리하면서 동시에 준거법에 근거한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 대회 그 자체라기보다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혹시 우리의 논거가 틀린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대회 때부터 저희 팀원들은 방학 내내 일주일에 4회 이상 모여 (마지막 주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머리를 맞대고 Claimant, Respondent 양 측의 논거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낯선 해외의 학술자료 및 판례들을 검색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본교의 교수님과 실무에 계신 변호사님들께 의견을 여쭙기도 하였습니다.

Q. 수상 소감은?

A. 국내 대회의 경우, 우승할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간 서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로스쿨 팀이 우승을 해왔고, 번번이 성균관대 로스쿨 팀은 4강, 준우승에 그쳤기 때문이죠. 이번에 숙원이었던 국내 대회 우승을 이루어서 학교 선배님들도 축하 연락을 주실 수 있으실 정도로 기쁩니다.

국제 대회의 경우, 8강에서 강팀 Loyola University Chicago를 이기고 4강에 진출하여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으나 4강에서 너무 아쉽게 패배하여 속상한 마음이 아직도 큼니다. 대회를 위해 신경 써 주신 학교 총장님, 로스쿨 원장님, 지도 교수님, 동창회 선배님들, 그리고 저희 팀을 코치해주신 우수 로펌의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Q.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해준다면?

A.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도 영어를 놓지 않고 꾸준히 연마해야 하고, 국제거래법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보통 바쁜 학업을 이유로 많은 것을 놓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하나를 잡기 위해 가용 가능한 5번의 방학 중 한 번의 방학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상사 중재에 관심이 있는 많은 동료들과 앞으로도 다양한 인맥을 쌓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창**



어린 시절 가슴 속에 간직했던 꿈은 '의사'였다. 의대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시간이 지나니 의사는 한 번에 한명 밖에 살리지 못하지만, 법조인이 되면 더 많은 사람과 사회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editor. 박소희

“같은 길을 걷어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로스쿨 동기들이 있어 행복해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이지승 학생 인터뷰(5기)



고시공부를 했다고 들었다. 로스쿨에 진학한 특별한 까닭이 있나?

한 두문제로 탈락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런데 막상 여러 번 떨어지고 나니까 용기가 안 생기더라. 사법시험을 그만둘 때 법조인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로스쿨 간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고 우연히 본 리트 시험의 성적도 나쁘지 않아, 본격적으로 진학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로스쿨에는 만족하나?

물론이다. 120% 만족한다. 중학교 시절 이후로 계속 법조인을 꿈꿨는데, 로스쿨에 들어와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됐다. 적지 않은 나이와 낮은 학점에도 불구하고 뽑아주신 외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고시 공부를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 삶이 굉장히 불규칙했다.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하고 나니, 동료들과 같은 길을 걷어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 함께 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다. 또 로스쿨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해, 사시 공부를 하던 시절에 비해 20kg 정도 감량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때에는 고시촌 원룸비만 한 달에 40만 원 가량 들었다. 비용을 줄이려고 학원 강의는 최소한으로만 듣고 인터넷 강의를 듣곤 했는데, 그 역시도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와서는 저렴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고, 50명 중 45명이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장학금 혜택이 잘 마련 돼 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법시험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로스쿨이 가진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본다.

학생회장도 했다고 들었다.

2학년 2학기에 원우회장(학생회장)을 역임했다. 한국의 국어대학교 로스쿨은 한 학년 당 50명이 정원인데, 학생 회장을 하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50명 정도를 알게 돼 정말 좋았다.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원장님과 부원장님, 교수님들께 전달하고 시험기간에는 간식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과 연합체육대회도 실시했고, 7기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행사도 기획·진행했다.

여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나?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못 하겠다. 학점도 조금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자리라면, 또 조금의 희생만 필요하다면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나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학점이야 재수강의 기회가 있지만, 사람은 놓치면 다시 만날 수 없다고 본다.

하루 일과는 어떤가?

보통은 9시쯤 일어나서 10시부터 수업을 듣는다. 수업이 다 끝나면 오후 3시쯤 되는데, 공부를 하다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 6시 이후에는 저녁을 먹고 1시간 정도 잠을 청한다. 9시쯤 다시 열람실로 와서 평균 새벽 2~4시까지 공부한다. 주말에는 잠을 조금 더 많이 자는 편이고, 방학 때는 봉사활동을 나간다.

어떤 봉사활동인가?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와 안산의 소년보호관찰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다. 먼저 솔로몬 로파크는 법률테마공원으로 찾아오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모의국회, 모의재판, 모의교도소 체험을 통해 법률지식을 알려주는 곳이다. 안산에 있는 소년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절도와 같은 주제로 법 교육을 해주고 있다. 법에 대해 반감이 많은 청소년들이지만,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모두 이해하고 수긍한다. 특히 안산 소년보호관찰소는 방학 때마다 갔었는데, 이후로 계속 요청이 와서 꾸준히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국제거래법'에 관심이 많다. 국제거래법을 조금 더 공부해서 향후 군법무관으로 진출하고 싶다. 군대 내에도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겠지만, 무기거래 등은 모두 수출·수입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군법무관이 되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프랑스에서 박사를 받아 대학교 강단에 도전하고 싶다.

강단에 서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변호사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강단에 서려고 하는지 로스쿨 면접 당시 교수님들께서도 물으셨다. 그때 나의 대답은, '법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의뢰인을 대변하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후학들에게 법학의 아름다움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웃으셨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의 아름다움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다.(웃음) [▶](#)

이지승이 알려주는 로스쿨 합격 노하우!

기출문제, 한번을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어야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를 풀 때 단 한번을 풀더라도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 5지 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이 3번이라고 하면, 나머지 보기인 1,2,4,5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법학적성시험은 시험의 소재만 바뀔 뿐, 문제출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과 오답을 만드는 방식을 익히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스터디원으로 모임을 구성하면 좋아
스터디를 할 때 다양한 전공을 가진 스터디원으로 구성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전공자가 서로 자신의 분야를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적성시험은 여러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교양서적을 구해서 읽고, 나머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스터디원의 도움을 받자.

부족한 분야의 기본 서적을 읽으면 좋아
여러 분야의 도서를 읽을 만한 시간이 없으면 얇은 책을 추천한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경제사상], [그림으로 이해하는 우주과학사] 등 "그림으로 이해하는 교양사전" 시리즈 중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서적을 추천한다.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도 읽어볼 것을 권한다.

금융감독원 입사 8년차 정유희 변호사의 소소하고 투박한 꿈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말이죠.” 꿈을 말하고 난 후 정변호사는 수줍게 웃었다. editor. 박소희

2년마다 새로운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저에게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 같아요!

정유희 변호사 금융감독원(연세대 로스쿨 출신)



Back To the School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입사했다. 당시 그녀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입사를 하면 영원히 법조인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원래 법 공부를 하다가 와서 그런지, 입사 후에도 항상 숙제를 덜 한 느낌이었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회사 자체는 정말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공부를 마치지 못한 느낌이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마침 운이 좋게 로스쿨 제도가 생긴 이후였고, 회사에도 공부를 위한 휴직 제도가 마련 돼 있었거든요. 특히 금융감독원에서의 업무를 보면 주로 법규를 놓고 해석하는 업무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학부 시절 4년 동안 거닐었던 캠퍼스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크게 감흥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은 캠퍼스의 느낌은 학부 시절과는 180도 달랐다고 말하는 그녀다. “평소에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캠퍼스에 있으니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혼자’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로스쿨에 오니까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어서 더 즐거웠어요. 다 같이 힘든 길을 가는 동기들이기 때문에 같이 뉘그러도 하고, 때로는 차도 한잔씩 마시면서 ‘언젠가는 이 터널도 끝나겠지’ 라고 말하며 서로를 다독여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바로 로스쿨의 낭만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묻자, 정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연다. “아무래도 보는 시각이 넓어진 느낌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와서 그런지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가 됐거든요. 가령 회사에서 금융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했었는데, 수업 과목에 금융규제법, 국제금융규제법이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던 일을 수업시간에 배우니까 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웃음)” “또 교과서에서만 보는 것과 실생활에서 해보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은행법을 배울 때 조문만 보면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읽히거든요. 근데 금감원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서 그 법을 보면, 아무래도 입체적으로 읽히죠. 교과서적인 공부를 하는 것보다 경험이 쌓이면서 시각이 넓어진 거죠.”

공정한 제재를 위하여

치열했던 로스쿨 과정이 끝나고 드디어 ‘변호사’ 자격증이 생겼다.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던 동기들 모두 법조인의 뜻을 펼치고자 각자의 자리를 찾아갔다. 정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 후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돌아왔다. 물론 송무·자문 업무도 의미 있고 좋은 일이지만,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더 해보고 싶었다고 답하는 그녀다.

정 변호사에게 변호사 자격증은 어떤 의미일까? ‘변호사 자격증’이 생기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자격증 수당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녀지만, 이내 진지하게 답한다. “조금 더 법학과 관련된 업무가 주어졌어요. 솔직히

금융감독원은 어느 부서를 가든 규정을 놓고 해석하는 업무가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법학과 관련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크게 ‘감독’하고 ‘검사’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어요. 감독은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검사는 사후에 교정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의 경우 작년까지는 감독 부서에 있었어요.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상품의 약관을 심사하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등)로서 업무를 시작하려는 금융회사를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금융상품 약관심사는 저 역시 소비자일 때 한 번도 읽지 않고 덮었던 금융상품의 약관들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심사하는 업무였어요.”

입사 8년차 정 변호사는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지금 은 ‘제재심의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검사’와 관련된 부서예요. 저희 부서가 심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검사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위법·부당사실에 대해 제재해요. 이후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제재심의국’에서 검사서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한 번 더 심사 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재심의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거쳐 최종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재심의국은 제재를 할 때 거치는 여러 단계 중 한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재의 종류에는 신분상 불이익(감봉 등), 영업상 불이익(영업정지 등), 금전상 불이익(과태료, 과징금 등)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재는 제재대상자에 대해 불이익한 것이므로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검사국, 제재심의국, 제재심의위원회 등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더 꼼꼼하게 법조문을 찾아보고 판단해서, ‘올바른 제재’, ‘공정한 제재’를 위해 노력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즐거운지 묻자, 정 변호사의 표정이 금세 환해진다. “법규를 차근차근 그리고 촘촘하게 뜯어볼 때 제일 재밌어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아시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처럼, 제재라는 불이익을 줄

때에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 없이 법규와 사실 관계를 놓고 꼼꼼하게 판단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오는 즐거움이 가장 큼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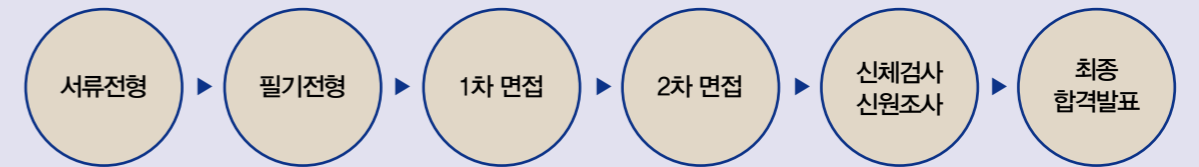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회사로 유명하다. 특히 2년 마다 부서가 변경되고, 직원들은 새로운 부서에서의 업무를 익히고 배워야 한다. 입사 8년차의 정유희 변호사가 거친 부서만 해도 로스쿨로 인한 휴직기간 3년을 제외하더라도 벌써 3개에 달한다. 정 변호사가 거친 여러 개의 부서 가운데 가장 보람 있었던 업무를 묻자,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신용카드 업무를 했던 때가 제일 기억나요. 금융회사에서 써온 약관을 읽으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사실 아무도 읽지 않는 약관이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찾아서 수정하고 제 의견이 반영됐을 때 보람되고 뿌듯함을 느꼈죠.”

정 변호사는 그녀가 아직 근무해보지 못한 부서를 ‘미지의 세계’라고 일컬었다.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 업무만 하고, 증권 회사에 들어가면 증권 쪽 업무만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신용카드 등) 등의 다양한 업무를 2년마다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가 열려있는 거죠. 법학에도 민법, 상법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금융 업무도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씩 배워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로스쿨 후배들을 위한 한마디를 부탁했다. “올해 금융감독원 신입 직원 중에 약 40% 정도가 변호사 자격증이나, 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회사에 입사하면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 업무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신입직원의 경우 맡은 업무에 변호사 업무가 더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도 저는 많은 로스쿨 후배분들이 금융감독원에 입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동시에, 본인의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니까요. 금융감독원으로 오세요!” **창**

정유희 변호사가 알려주는 깨알 팁! 금융감독원 이렇게 들어오세요!

Q.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입사할 수 있나요? 공채(신입직군 입사)와 전문(경력직군 입사)라는 두 가지 루트로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공채로 입사했기 때문에, 공채 직원 프로세스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입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Q. 서류전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지원자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자기소개서의 질문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본인이 가진 어떤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열정을 드러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Q. 필기전형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어요! 필기에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금융감독원의 필기시험은 어렵기도 하고 탈락자도 많습니다. 특히 로스쿨 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도 하면서, 입사 시험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공 공부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과목	일반논술	영어	총점
200점	180점	20점	400점

Q. 전공과목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필기시험 중 전공과목 시험에서는 변호사시험 과목이 두루두루 나옵니다. 시험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상법’과 ‘행정법’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과목들도 조금씩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시험은 객관식, 약술형, 사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출제됩니다.

Q. 논술과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평상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경제와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눈여겨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재미로라도 경제 뉴스를 자주 접하세요! 그러면 논술은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면접은 집단토론, 그룹면접, 임원진 면접 등 1-2차 면접으로 나뉘어져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이슈들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평소에 잘 정리해 놔야겠지요.

Q. 금융감독원 근무 시 가장 필요한 능력은? ‘꼼꼼함’과 ‘유연함’이요! 우선 금융감독원 업무 중 규정을 놓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하지 않다면 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또 이곳에서는 다양한 금융회사 직원들과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한 분야에서 오래 업무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하루 빨리 그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유연함은 업무의 필수 요소입니다. 2년 마다 부서가 바뀌는 순환 보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연함이 필요한 것은 두 말 할 것 없겠죠?



사시존치론, 해법 아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조인 양성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가의 백년대계에 속한다. “시험에서 양성으로”의 구호 아래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는 데 15년이 걸렸다. 예정된 사법시험의 폐지가 다가오면서 요즘 사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와 자존심, 심지어 지역상권까지 가세하다 보니 논의가 혼탁해진 면이 없지 않다. 단기적 이해관계나 자극성 구호를 걷어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접근할 일이다. 사시존치론은 로스쿨의 폐단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사시의 필요성으로 연결시킨다. 사시존치론의 첫 근거는 “개천에서 용”의 논리다. 한 때 사시를 과거급제처럼 여겨 불우한 여건을 이겨내고 수석합격의 소감이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사시가 등용문이나 출셋길이라는 사고 자체가 철 지난 관념이다. 오늘날은 “용”이 아닌 “시민 속의 전문가”를 기본모델로 할 시대다.

“개천-용”의 사고가 비판받자 사시가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구호가 나왔다. 그러나 수만명 응시자들 중 겨우 3%의 합격자를 내는데, 그 3% 안에 경제약자들이 포함된다는 제도적 보장은 없다. 합격생의 면면을 보니 경제약자도 없지 않더라는 정도다. 최근에 올수록 그러한 경제약자의 비율도 급감하고 있다. “희망의 사다리”라고 포장하지만, “3%에게만” 희망이고, 약자를 위한 “사다리”는 없다.

그런 추세를 염려하여 로스쿨을 설계할 때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중에서 특별전형할 것을 로스쿨 인가의 조건으로 했다. 로스쿨 체제에서는 매년 7% 내외의 취약계층의 입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경제취약층에겐 전액 장학금이 제공된다. “사시는 합격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수험 기간 동안 경제 지원이 없는 반면, 로스쿨에는 장학금 혜택이 있고 3년간 노력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기에 법조인의 꿈을 갖게 되었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법연수원을 다니면 비용도 안 들고 월급까지 받으니 사시-연수원 체제는 “돈스쿨”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연간 500억~900억원에 달하는 연수

원 운영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생긴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로스쿨에서는 학교의 장학금 확충 노력 덕분에 전체 학생의 40% 가까이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닌다. 정부는 법정화된 재정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또 다른 비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라는 게 있다. 유력자의 자제들이 입학 및 취업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입학 단계에서 무슨 특혜로 수사·처벌 받은 예가 없다. 판검사 등 공직자의 임용에서 누구의 특혜가 투입할 정도로 허술할 리가 없다. 로펌 등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선발하는가는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사적 영역에 음서제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사시 출신이든 로스쿨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작동할 것인바, 유독 로스쿨과 음서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취업경쟁에서 공정성 확보는 전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특혜 시뮬거리가 없는지를 감시·비판하는 것은 법조사회는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로스쿨 체제는 여러 의미있는 비판들에 대해 제도 개선으로 응답할 것이 쌓여 있다. 그러나 로스쿨의 문제가 사시 존치를 통해 해소되는 게 아니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의 출신 대학 및 전공 영역은 사시 시대보다 훨씬 다변화되었고, 취약층의 진입을 보장하고 있다. 굳이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중위층 이하, 서민층 학생들이 로스쿨에 충분히 진학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들이 나오면서 공익 분야의 진출도 활발해졌다. 변호사는 시민의 이웃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물론 이런 추세는 가속화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대한변협과 지방변협, 특히 서울변협의 활동이 눈부시다. 전관예우의 관행에 썩기를 막고, 법조비리 척결에 앞장서고, 법률서비스를 저변화하는 노력은 상찬받을 일이다. 다만 로스쿨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변협의 체통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로스쿨과 변협은 적대자가 아니라, 좋은 법조인 양성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사시와 변시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폐지시기가 다가오면서 변호사 단체와 법학과 교수단체를 중심으로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 관악을 지역구의 보궐선거에서는 사법시험 존치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다.

과거로 돌아가서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는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양성하기 보다는 판사와 검사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었고, 신림동에서 암기식으로 하는 공부로는 국제화, 다양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률시장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의 완전개방 또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대변되는 끼리끼리 문화의 부작용 해소였다. 속칭 SKY 대학 출신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렇게 구성된 사법연수원은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산실이 되었다. 또한 전관예우 또는 봐주기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세 번째는 사법시험에만 몰두하는 풍토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다. 그 당시 서울대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렸다. 인문대, 공과대, 심지어 의과대까지 그 전공을 묻지 않고 사법시험을 준비했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전공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는가. 로스쿨은 이렇듯 다양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들이 반영되어 탄생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로스쿨을 비난하는 논거들을 보면, 다시 과거로 가자는 이야기로 들린다. ‘희망 사다리’ 또는 ‘개천의 용’ 이론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커져만 간다. 로스쿨들의 소수자전형을 한번 검토라도 해본 주장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면, 합격에 대한 보장 없이 20대 청춘을 고시촌에서 보내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학원비에 하숙비, 책값, 용돈 등을 부담하면서 공부하기는 너무 버겁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혼자 공부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시대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 사다리를 주고 싶으면, 변호사협회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아직도 변호사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

변호사단체의 주장처럼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로스쿨은 제도를 시작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다. 로스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를 하나 찾았다고 이를 부풀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는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통해 고치고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사법시험 준비를 위해 청춘을 불사르던 시절, 그때 우리는 어떠했는지 과거를 되돌아 봐주기 바란다.

사법시험이 폐지에 따른 법대 지원 기피, 법학 이론교육 기반 붕괴, 로스쿨의 수험법학화, 기본 과목 이외 과목의 수강기피 등 한계를 지적하는데, 로스쿨은 본질적으로 변호사인 실무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법학이론의 발전이 걱정이라면 법학과 교수님들이 더 노력해주면 될 일이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했으면 한다. 국민들만 피곤하다. [▶](#)



로스쿨이 진정 '희망 사다리'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관악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당선됐다. 관악 지역은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는 하숙 및 독서실, 식당 등으로 상권이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수 십 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출마하는 여·야 모든 후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야만 당선에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국가발전을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10여 년 동안 정부, 학계, 법조계의 연구와 합의를 거쳐 도입됐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외국 로스쿨의 장점만을 접목시켜 출범했으나 제도의 출범 이후 일부 단체 및 의원들은 예비시험 제도 도입, 사법시험 존치 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해 왔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로스쿨이 출범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국가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지역구 특성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내고 있다.

예비시험 제도 도입 및 사법시험 존치의 중요 논거로 주장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이다.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서민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들은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사법시험은 과연 희망의 사다리였나

그런데 과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서민들이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었을까? 단연코 아니라고 본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사법시험까지 총 678,814명이 출원했으며 그 중 2.94% 인원인 19,946명이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한 다수는(658,868명) 관악구 지역에서 벗어나지

전문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연간 1인당)

(단위: 천원, %)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	15,321	15,556	19,905
장학금	6,377	3,262	2,916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40.6	20.5	17.2
실질 등록금	8,943	12,293	16,989

(*대학알리미 2013년도 공시정보 기준)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장학금/실질등록금 비교 (2014년도 기준)

(단위: 천 원)

	연간등록금 (A)	장학금 지급금액 (B)	장학금지급비율 (A/B)	실질등록금 (A-B)
국공립 평균	10,719	3,414	31.9	7,305
사립 평균	19,831	7,937	40	11,894
전체평균	15,834	5,954	37.6	9,880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관악구 지역 상권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동안 투자한 열정과 노력에 비해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횟수 제한이 없어 3%만이 합격하는 시험에 '대박'을 꿈꾸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심할 경우 10년 넘게 시험공부에만 매몰되고 이로 인한 국가적 고급 인력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반면 로스쿨은 사법시험과 다르게 서민을 위한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주고 있다. 로스쿨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 및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매년 입학정원의 5% 이상의 인원을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고 있다. 매년 평균 6.15%(126명)의 인원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 중 재학생 394명(12~14년) 대부분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총 59억) 학업에 임하고 있다.

특별전형입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123명(약 18억, 이하 장학금액) △2010년 116명(약 17억) △2011년 124명(약 18억) △2012년 134명(약 20억) △2013년 128명(약 19억) △2014년 132명(약 20억)이었다.

최근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 등 열악한 계층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로스쿨 학생 499명(1기~4기) 중 315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금번 제4회 시험 합격자 75명 중의 면면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등이다. 또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이들의 법조진출 현황을 보면 검사 5명, 재판연구원 5명, 공공기관 25명, 법무법인 62명, 기업체 28명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딛고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고 있는 특별전형 출신자들의 미담사례들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기회와 희망의 터전은 '로스쿨'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로스쿨의 학비가 최대 2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시 존치국민연대 이석근 공동대표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돈이 없으면 서민들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게 로스쿨은 로스쿨별로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각 전문대학원별로 비교했을 때에도, 로스쿨이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액 또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연 실등록금은 7,305천원, 사립대 연 실등록금 11,894천원으로, 일부 로스쿨의 등록금은 학부 등록금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대학교 출신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 사법시험 시절보다 법조인으로서의 진입장벽이 훨씬 더 낮아졌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11개 지방 로스쿨 중 강원대, 제주대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10% 이상, 나머지 9개 로스쿨은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지역대학 출신자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5학년도 지방대학 로스쿨의 지역균형인재 선발결과, 총 입학정원 900명 중 180명(19.89%)이 지역대학 출신들을 선발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로스쿨 입학생과 사법시험 합격자의 매년 평균 출신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약 2.2배로 진입 장벽이 훨씬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스쿨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4개의 국내대학, 70여개의 국외대학, 총 170여개 대학 출신자가 입학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경우 76개의 국내대학, 34개의 국외대학, 총 100여개 대학에서 합격해 로스쿨보다 훨씬 더 적은 학교에서 합격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의 학생들이 2012학년도에는 전체 입학자 중 8.78%에서 2015학년도에는 14.95%로 증가했으며 이는 로스쿨로의 문호가 더 넓게 확대되고 증가됐음을 의미한다. 즉, 로스쿨은 단연 로스쿨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로스쿨 법과대학과의 상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학 발전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지원해야

그렇다면 과연 서민과 경제적·사회적·신체적 취약계층을 위해 국회, 정부, 법조계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있나?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에서 매년 최소 900억 원 이상을 사용했으며, 지금도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약 5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 비용에는 시설운영비와 교원·직원 보수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생들의 월급도 포함되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대다수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지만, 법조인 양성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수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의 경우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도를 기점으로 사법연수원은 폐지되고 그 동안 사법연수원이 수행해왔던 법조인 양성 기능을 일원화된 로스쿨이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다.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장학금과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로스쿨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사법시험제도 유지 관련 예산(사법연수원 예산) 일부를 로스쿨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여 특히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장학지원을 확대한다면 로스쿨 등록금 반값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로스쿨은 사법시험 제도와 달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도 법조인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실력과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특히 로스쿨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막대한 시설 투자, 교원 확충,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 장학금 지급, 법과대학 폐지 등을 조건으로 출범했다. 또한 정부도 이에 따라 단계별로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하면서 기본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법조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와서 과거제도로 회귀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을 통해 양질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존 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 관련 예산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스쿨 전체 등록금액 960억 중 절반(약 480억)만이라도 정부가 지원한다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선발인원이 줄어들어 해마다 사법연수원 유지비용 또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의 유지비용만큼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국회, 언론단체가 서민을 생각한다면 막연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기 보다는, 로스쿨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

사법시험 존치 불가 이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사시존치 불가 이유 - 요약 -



1. 대학교육의 황폐화

- 사시가 존치되면 학부에서 전공공부를 하지 않고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게 되어 학부 교육 전체를 망가뜨린다.
-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해야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가 될 수 있다.

2. 지방 분산에 역행

- 사시가 존치된다고 지방 대학생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수도권 대형 대학이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게 된다.
- 로스쿨을 통해서 다수의 법률가가 배출되어야 지방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로스쿨/변사의 공	사시의 과
대학교육 정상화	대학교육 황폐화
취약계층에 직접 기회 부여	취약계층이 도전하기 어려운 구조
지방대학 출신자 기회 확대	수도권 집중

1. 법조인 양성의 원칙: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

(1) 교육을 통한 양성

- 체계적 교육과정에서 법원리를 습득하여야 응용력을 가진 법률가가 될 수 있다.
- 토론, 질의응답, 모의재판, 임상실습, 인턴, 개인생활지도, 다양한 교과외 활동(논문공모, 학술지, 동아리 등) 등을 통해서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인성을 키울 수 있다.
- 독학하면서 학원강의로 학습하면 시험 합격을 위해 문제와 답을 외울 수밖에 없어서 법률가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을 쌓을 수가 없다.
- 변호사를 체계적인 교육 없이(어디서든지 법학과목 35학점만 이수하면 응시자격 부여) 시험으로만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2)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

-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후에 법학을 공부해야 한다.
-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부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다양성, 전문성, 국제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2. 사시는 학부교육을 황폐화시킨다.

- 사시로 인해 학부생들이 전공 공부를 하지 않고 고시공부에 매달려서 전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시망국론).
- 타전공생들이 법학 과목을 대거 수강하여 법학전공자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시험과목 이외의 법학과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법학교육이 사시 합격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3. 사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

○ 사법시험

- 사법시험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은 28세, 준비기간 평균 7년, 매년 평균 1천만원의 비용(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포함)이 소요되는데 합격할 확률은 2.94%에 불과하므로 취약계층이 도전하기는 어렵다.
-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장학금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한다.
- 사법시험 공부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 들어 사시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사람은 6.6%에 불과하다.

○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 취약계층은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의 기회를 갖는다. 2015년까지 총정원의 6.17%가 특별전형을 통해서 입학하였고, 지금까지 315명이 변호사가 되었다.
- 등록금대비 38.2%가 장학금으로 지급되므로 특별전형입학생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공부하여 3년 후 변호사가 되었다.
- 특별전형 입학생 외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로스쿨에 많이 진학한다. 가구의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학생이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23%이다.
- 사회경험이 있는 나이든 학생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와 3년 동안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29세 이상이 35%이고 직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46.7%이다. 이들은 사시에 도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4. 사시는 일부 대학 졸업생이 독점적으로 점유하였다

	사법시험 (2002~2014)	로스쿨 (2009~2015)	증감
상위 10개 대학 점유율	84.52%	75.7%	8.82% 감소 ▼
수도권 6개 대학 점유율	76.56%	65.97%	10.59% 감소 ▼
합격생 배출 대학 평균수	연 평균 43개교	연 평균 95개교	52개(121%) 증가 ▲

- 사시 합격생을 배출하지 못한 대학 중 로스쿨 합격생을 배출한 대학수는 34개이며 대부분 지방대학과 사이비대학이다.
- 출신학부 구성(이재협 등, 16면)

	로스쿨변호사	40-43기 변호사	39기 이전 변호사
서울대	31.5%	35.3%	55.8%
서연고	55.5%	61.6%	77.2%
지방대	17.4%	10.5%	7.3%

5. 법전문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사시존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로스쿨은 이제 출범한지 7년 되었고 변시는 4회 실시되었다.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일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 로스쿨이나 변시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그런 문제점이 사시존치로 해결될 수 없다.

6. 사시존치 주장의 허구성

(1) 국민의 75%가 사시존치를 지지?

- "1,000명 중 74.6%가 사시존치를 지지했다"고 하나(동아일보 2015. 5. 28) 여기서 1,000명은 응답자임.
-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1.6%, 따라서 국민의 88.4%는 무관심하다.
-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편향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

(2) 사시가 신분이동의 사다리?

○ 이재협교수 등 연구 결과(서울대 법학 56-2, 한겨레 2015. 6. 22)

- 사시가 더 이상 계층이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소득분포 및 교육정도가 높은 가구의 비율이 사시와 로스쿨에서 차이가 없다.
- 집안에 법률가가 있는 정도도 사시와 로스쿨에서 차이가 없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의 다양화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이 출신 대학이 다양지고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이 늘었다.
- 2015년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인재를 20%(강원, 제주는 10%) 우선 선발함에 따라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3) 사시존치로 비로스쿨 법학교육이 정상화?

- 사시가 존치되면 우수한 대학의 학부생들이 대거 사시에 응시하여 비로스쿨 법학전공생들에게 기회가 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시의 경우 서울대 비법이 2, 3 위)
- 상위 10개 대학의 사시 점유율이 84.53%였고, 사시합격생의 수가 작을수록 집중도가 더 높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사시가 존치되어도 비로스쿨 법학전공자가 사시에 합격할 확률은 매우 낮다.

(4) 로스쿨은 중산층이 도전할 수 없는 비용이 든다?

- 장학금이 등록금 총액의 38.2%가 지급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므로 등록금이 문제되지 않는다.
- 장학재단의 대여장학금을 6,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돈이 없어도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5) 다른 공무원임용시험도 경쟁률이 높다?

- 변호사시험은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이다. [창](#)

경제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닌 장학금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로스쿨을 통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든든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15.06.24~7.06)한 결과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등록금 및 장학금 지급현황

총 등록금은 95,338백만원이며 이 중 장학금으로 35,846백만원(37.6%)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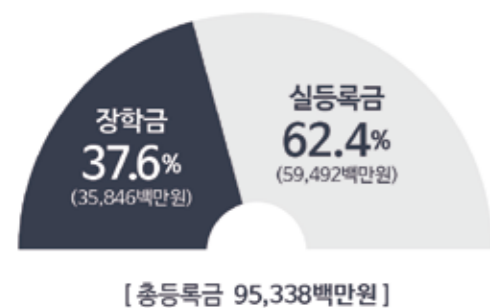
구분	연등록금(A)	장학금(B)	장학금 지급비율(A/B)	비고
국·공립	28,310	9,017	31.9	10개교
사립	67,028	26,829	40.0	15개교
합계	95,338	35,846	37.6	25개교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장학금/실질등록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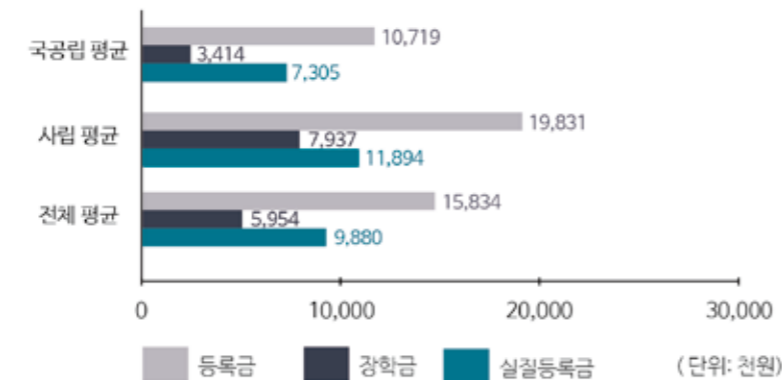
(단위: 천원, %)

구분	연등록금(A)	장학금(B)	장학금 지급비율(A/B)	실질등록금(A-B)
국·공립 평균	10,719	3,414	31.9	7,305
사립 평균	19,831	7,937	40.0	11,894
전체평균	15,834	5,954	37.6	9,880

▼ 총 등록금VS장학금 지급액



▼ 1인당 실질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021명 중 4,250명(70.6%)에게 장학금 35,846 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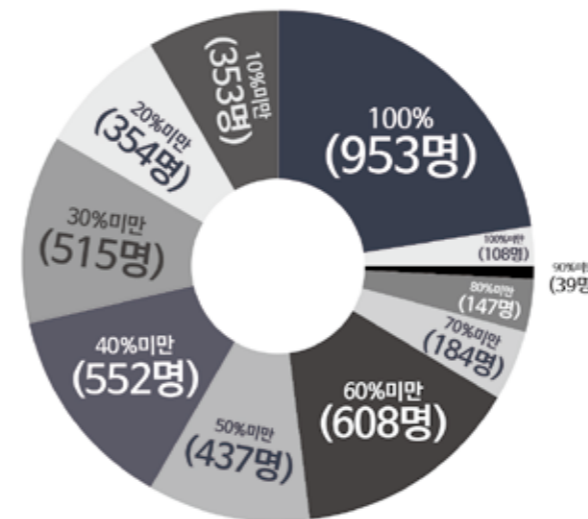
-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자 : 953명(15.8%) 15,418 백만원이며, 이중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입학생 394명(6.38%)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환경만을 고려하여 전액장학금을 폭넓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3년간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공립 평균 32,157천원, 사립 59,493천원 임 (생활비 미포함)
- 전체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50%이상 수혜 학생 수는 2,039명으로 33.9%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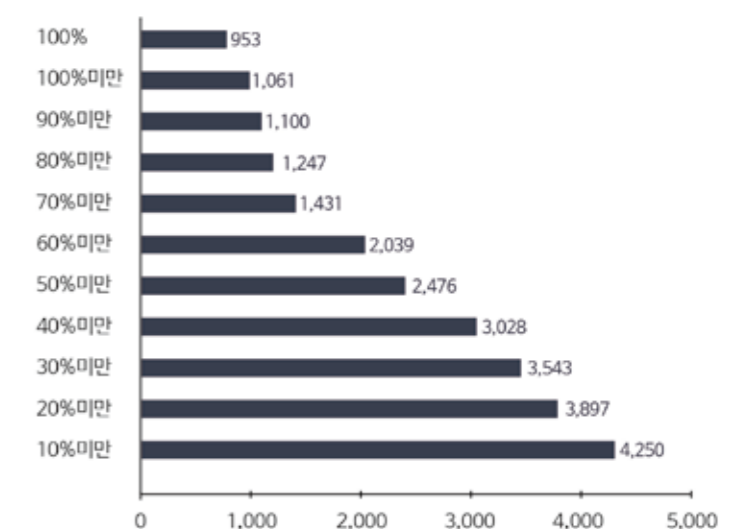
장학금 지급비율	국·공립(10개교)	사립(15개교)	합계(25개교)	구성비*
100%	379	574	953	15.8
90% 이상 ~ 100% 미만	80	28	108	1.8
80% 이상 ~ 90% 미만	21	18	39	0.6
70% 이상 ~ 80% 미만	20	127	147	2.4
60% 이상 ~ 70% 미만	28	156	184	3.1
50% 이상 ~ 60% 미만	184	424	608	10.1
40% 이상 ~ 50% 미만	250	187	437	7.3
30% 이상 ~ 40% 미만	61	491	552	9.2
20% 이상 ~ 30% 미만	105	410	515	8.6
10% 이상 ~ 20% 미만	205	149	354	5.9
~ 10% 미만	293	60	353	5.9
합계	1,626	2,624	4,250	70.6

* 구성비 : 총 재학생 6,021명 (25개교) 기준 산출

▼ 장학금 지급비율별 인원



▼ 장학금 지급 비율별 누적인원



다른 전문대학원과 비교했을 때, 법학전문대학원 실등록금 부담경감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과 등록금, 장학금, 실질 등록금을 비교해 봤을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은 매우 낮은 수치인 반면 장학금의 비율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대학원의 2013년 등록금 및 장학금을 비교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비싸다는 것이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도 열정과 의지,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연간 1인당)

(단위: 천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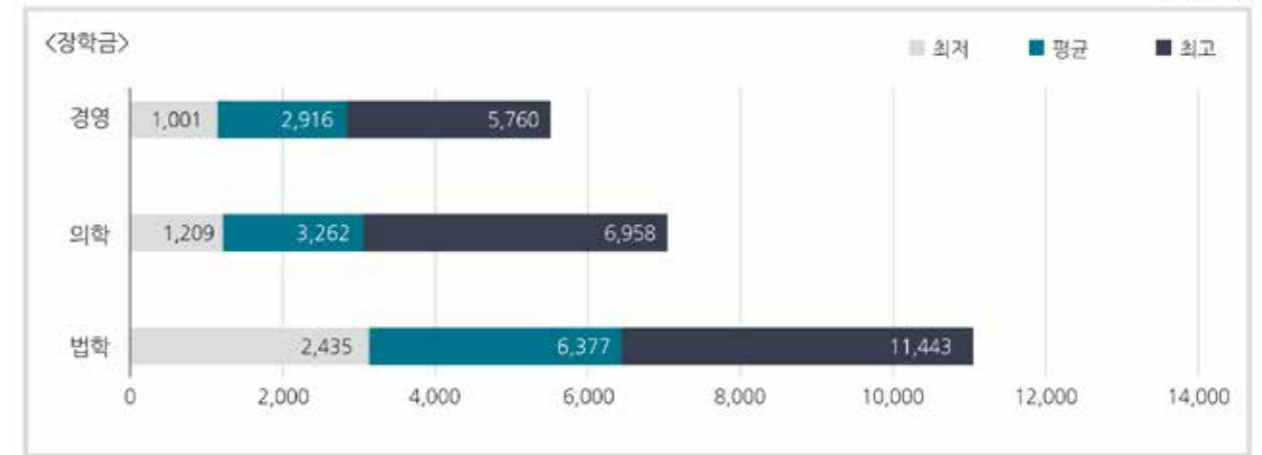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0,840	11,443	74.0	13,997
	평균	15,321	6,377	40.6	8,943
	최저	9,650	2,435	23.6	4,012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1,836	6,957	34.1	18,042
	평균	15,556	3,262	20.5	12,293
	최저	9,830	1,209	8.0	7,698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28,754	5,759	33.0	27,752
	평균	19,905	2,916	17.2	16,989
	최저	9,264	1,001	3.5	6,207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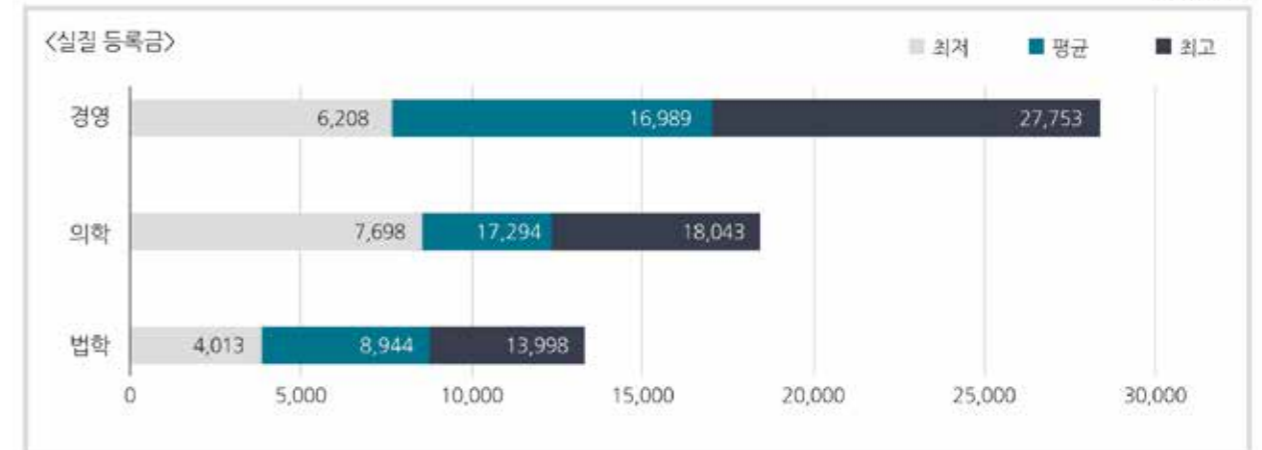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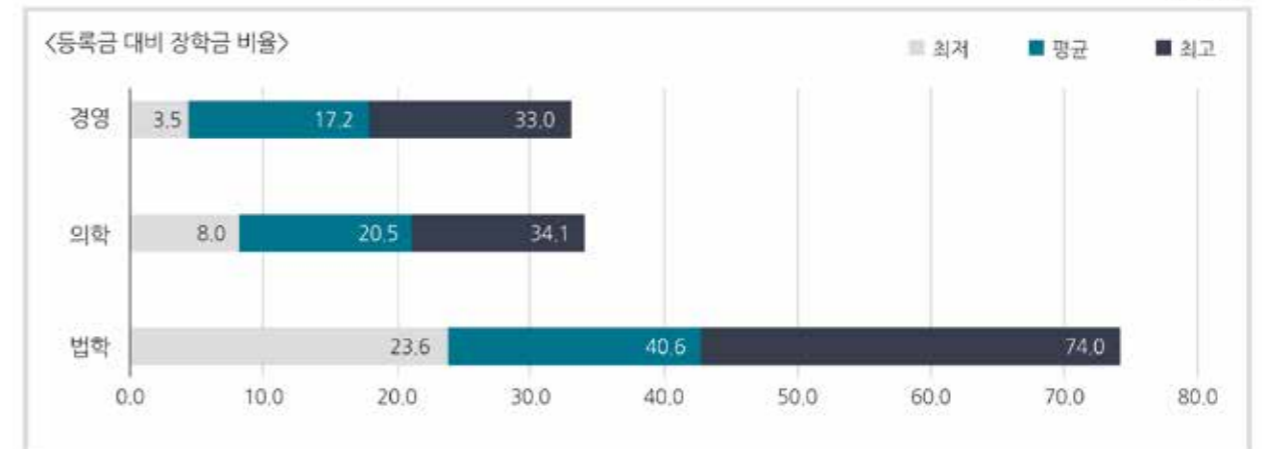
(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단위: %)



로스쿨

어디까지 가봤니?

법은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며, 다른 문화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산물이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법학을 연구하고 지키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으며, 그들과 함께 숨 쉬는 법학의 전당이 있다. 고풍스러운 멋을 뽐내는 곳부터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건축물까지! 세계의 로스쿨을 살펴보자!



Newcastle upon Tyne, UK



Th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Northumbria at Newcastle, City Campus East

금방이라도 우주로 발사될 것 같아 보이는 미래지향적(?)인 이 건물, 바로 영국의 Northumbria대학 법대 건물이다. 디자인과 구조에 있어서 이미 20개의 상을 수상한 어메이징한 건축물. 건물 내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는 태양판도 설치되어 있으며, 풍부한 채광이 가능하다.

Los Angeles, California, USA



Southwestern Law School, Bullocks Wilshire

Bullocks Wilshire 건물은 로스엔젤레스의 상징적 아이콘이 된지 오래다. 1929년 귀족들을 위한 명품 백화점으로 설립됐지만, 1997년부터 로스쿨 건물로 사용 중! 최대한 오리지널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재건축 된 이 건물은 로스엔젤레스의 역사-문화적 기념비로 자리할 만큼 유명해졌다고 한다.

Clayton, Victoria, Australia



Monash University Law Chambers

호주 멜버른 중심가에 위치한 Monash 대학교 시티캠퍼스(city campus) 법대 건물. 유리로 덮인 웅장한 건물은 현대적인 느낌을 더한다. 학생들을 위한 대형 강의실, 강당을 비롯해 명상실과 주방까지 갖춘 최신식 건물이다!

New Haven, Connecticut, USA



Yale Law School, Sterling Law Building

1824년에 설립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로스쿨인 예일대 로스쿨. 12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대성당 건축물을 모방해서 지어졌으며, 로마나 중세 건축가들이 널리 이용한 아치 형태를 사용했다. 디테일한 조각과 색색의 유리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빼앗는 건물. 건물 내에 로스쿨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탁아소도 있다.



Monty를 빌려드립니다!

예일대 로스쿨 도서관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강아지 몬티도 빌려준다는 사실. 이름하여 테라피 견(Yale Law School Therapy Dog)!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학교 측의 배려인 셈. 몬티를 한번 대어(?)하면 15-20분가량 몬티와 즐거운 시간(먹이를 주거나 예뻐해 주는)을 보낼 수 있다.

Singapore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 of Law, Li Ka Shing Library

2007년 건축된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chool의 법학 도서관. 소장 도서가 무려 200,000권에 달한다. 이 도서관은 유리와 나뭇잎을 이용한 현대 걸작에 속하며, 무엇보다 우성한 식물들로 덮여있는 창문이 인상적이다. 공부에 바쁜 학생들은 건물 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다.

Sydney, New South Wales,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Faculty of Law

건축물 보다는 어쩐지 '예술품'이라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릴법한, 호주 시드니 대학 법대 건물. 아름다운 유리외관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느러미 형태의 거대한 강철 스테인레스 구조. 건물 전체를 시원하게 해주고 환기시켜주는 기능과 더불어 태양전지판을 통한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건물.

Hamburg, Germany



Hengeler Mueller Library of Bucerius Law School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건물은 독일 Bucerius 대학교 법학 도서관 건물. 색색의 아름다운 유리 외관은 책장에 꽂혀있는 책을 모니터로 설계했다고 한다. 화려한 외관만큼 내부에는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해서, 컴퓨터실, 극장, 유치원까지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법학 도서관이 아니라, 멀티관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알차다.

Hatfield, Hertfordshire, UK



Th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Hertfordshire, Law Court Building

영국 Hertfordshire 대학교의 법정 빌딩. 2011년 건축된 이 빌딩은 탄소 소비량이 일반 건물의 50%밖에 되지 않는 친환경 저탄소 건물! 게다가 빗물을 저장해서 농작물 수확에 활용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니, 미학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이 어디 있을까.

New York, New York, USA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놀라지 마시라. Fordham University School의 새 로스쿨 빌딩을 건축한 건축가가 바로 Pei Cobb Freed 라는 사실. 익숙한 이름에 고개를 가우뚱 했다면, 루브르 피라미드를 떠올려보길. 루브르 피라미드를 건축한 Pei Cobb Freed의 최신작이 바로 이 로스쿨 건물이다. 새 건물이니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호평 일색이라는 후문이다. [창](#)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루브르 피라미드(Louvre Pyramid) 1989년 완공됐다.

로스쿨에서 로스쿨과 로스쿨생을 바라보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박성태

66 변호사시험을 앞둔 5기를 보면서,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보면서 그 예민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을 주문한다. 99

로스쿨에서 로스쿨과 로스쿨생을 3년여 간 지켜보면서 로스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사법시험이라는 법조인 양성 제도 50년 역사의 빗장을 문 닫고, 전문화·세계화라는 거창한 이름과 함께 출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가 7년차에 다다랐다. 입학자 2000명이라는 파격적인 확대만큼이나 로스쿨과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지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7기의 선발까지 완료된 로스쿨 체제는 정말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정착해버렸다. 물론 아직도 소위 '완생'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제도적 보완점이 있기는 하다.

우선 로스쿨 도입으로 '신림동'이라는 고시촌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정도로 고시생의 발길이 끊겨버렸고, '고시 낭인'은 대폭 줄어들었다. 고시생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젊은 회사원들이 즐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고시준비로 인해 파행되었던 학부과정은 '법학 학부과정' 폐지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입시과정에서의 외국어능력, 면접능력의 요구로 인해 법정수사(speech)능력의 향상과 전문영역에 대한 요구에 조응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의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탄생, 건축을 전공한 변호사의 탄생, 시각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탄생 등 전문화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로써 시민에겐 특정분야에 탁월한 변호사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할 변호사를 선물하게 되었다.

가장 의미 있는 7년 새의 변화는 변호사의 특권의식과 권위가 조금은 시민의 편에서 동등해진 것이다. 특권변호사가 아닌 직업변호사의 면모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나

던 시대는 갔지만,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줄 변호사는 탄생해버렸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3년여의 로스쿨 생활을 돌이켜 보면, 로스쿨은 외부에서 보여 지는 '낙인찍기'를 스스로 버티기 위해서 경주해야 한다. 우선 로스쿨이 원하는 인재상은 기계적 법조인의 양산이 아니다. 기계적 법조인이란 형식적인 법해석학만을 배우고, 암기하여 적용해오던 과거의 폐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법조인형을 말한다. 단순히 학교성적에만 천착하여, 전문성을 기르지도, 특성화를 이루지도 못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물론 합격률로 인해 다양한 학교 생활(학회활동, 대외활동)을 하던 사람도 '공부만 해야 하는 미생'이 되어가는 걸 보면 합격률의 조정 또한 절실하기도 하다. 또한 이 로스쿨 과정이 성적표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 법조인으로서 꿈꾸는 '나'를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 변호사시험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이외의 채용과정에서도 학업이수와 다양한 로스쿨에서의 전문화경력과 활동을 토대로 임용, 추천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로스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

합격률에 대한 조정과 학업과정의 부담완화를 기하는 한편 이로써 다시금 로스쿨에서의 활동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각종 해외연계프로그램, 가인법정변론대회,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학회들과의 연합(인연, 통한법전 등등), 사법참여단, 실무 수습 등을 살려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법조인이 아닌 살아 숨쉬고, 실질적인 업무능력의 향상과 내실 있는 법조인 양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앞둔 5기를 보면서,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보면서 그 예민함을 피부로 느끼면서 조금은 더! 넉넉한 마음을 주문한다.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며, 시험을 앞둔이의 귀한 마음을 폄훼하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촌음을 아껴서 화룡점정을 해야 할 그들을 보며 우리 로스쿨 공간이 시험이라는 족쇄로 척박해지지 않고, 서로가 Win-Win 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음 하는 작은 바람이다. 로스쿨이라는 공간이 작은 사회를 담고 있듯이, 이 작은 사회가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창



“오스카 와일드 사진과 사진의 저작물성”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명예기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 5기) **윤성보**



66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위력적이다.
99

『**신고할 것은 내 천재성밖에 없다.**』 미국에 입국하면서 누군가가 세관에 신고할 때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일까요? 이 말의 주인공은 『행복한 왕자』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입니다. 온몸이 금박으로 덮여있고, 눈이 사파이어로 되어있고, 칼자루에는 루비가 박혀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했던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해 자신을 희생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그의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동화뿐만 아니라 시, 산문도 썼습니다. 또한 그는 희곡에서 더 재능을 드러낸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희곡 작품으로는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 ‘진지함의 중요성’, ‘살로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재임에는 틀림없지만, 겸손함은 그에게 미덕이 아니었나 봅니다.

『**달변가**』 그리고 『**독설가**』 ‘천재성’ 발언에서 짐작하실 수 있었겠지만, 오스카 와일드는 ‘달변가’이자 ‘독설가’이기도 했습니다. 달변가이자 독설가인 사람들은 대개 열성적인 팬도 있지만, 그만큼 안티팬도 많죠? 오스카 와일드도 그랬습니다. 사교계 최고의 인기인이었고, 미국에까지 초청받을 정도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6세 연하남을 사랑한 남자**』 1891년, 오스카 와일드는 16세 연하남인 알프레드 더글라스(Alfred Douglas)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스카 와일드는 오스카 와일드는 유부남에 2명의 아들까지 둔 상태였었고, 오스카 와일드가 37살, 알프레드 더글라스가 21살 정도의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그의 연인인 알프레드 더글라스는 당시 옥스퍼드에 재학 중이었고, 시인이자 번역가였습니다. 사랑이 한창 불타올 때, 그들은 어느 연인처럼 자주 싸우다가도 금방 화해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성애 스캔들로 인해 후에 오스카 와일드는 풍기문란으로 2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패션 선두주자**』 독설가라고 하니 거친 문학을 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했던 유태주의 작가였습니다. 미를 추구했던 작가답게(?), 그는 당대 최고의 멋쟁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아래 오스카 와일드의 독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실크 스타킹과 비로드(veludo) 반바지를 비롯해 살짝 웨이브가 진 헤어스타일에서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http://www.metmuseum.org/collection/the-collection-online/search/283247>

이 사진은 뉴욕의 유명한 사진작가인 나폴레옹 사로니(Napoleon Sarony)가 찍은 것입니다. 사진은 앞서 언급한 오스카 와일드의 거의 모든 점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턱을 피고 누군가를 똑바로 응시하는 듯한 표정은 그의 독설가다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책은 그의 문학가로서의 재능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입은 의상은 그가 얼마나 멋쟁이인지를 잘 보여주며, 배경에 있는 휘장과 바닥에 놓인 화려한 무늬의 카펫은 이러한 그의 의상과 적절히 어울려 오스카 와일드를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그런데 이 사진을 Burrow-Giles社가 무단·복제 판매함에 따라, 사로니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원고 사로니의 저작권침해 주장에 대해 피고 Burrow-Giles社는 사로니가 촬영한 사진은 ‘기계를 이용한 사실의 재현’에 불과하기에 저작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로니가 찍은 오스카 와일드의 사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① 오스카 와일드로 하여금 적절한 포즈를 취하게 한 점, ② 여러 가지 장식을 선택하여 꾸미고, 적절한 의상을 입힌 점, ③ 전체적 구도, 조명의 세기를 결정한 점, ④ 오스카 와일드로 하여금 바람직한 표정을 제안·환기한 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저작자인 사로니의 고유한 정신적 노력이 인정되므로, 사로니의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다면 만약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진 촬영의 목적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재현하는데 있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판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성이 인정되려면 어떠한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판결)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나온 판결이지만,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판결에서 말하는 사진저작물에서 창조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의 예시가 앞서 본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판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시와 상당부분 흡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사로니의 오스카 와일드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위력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찍은 사진은 웬만한 달변가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독설가이자, 능력 있는 작가였고, 패션의 선두주자였던 오스카 와일드의 모든 특징을 한 장의 사진에 다 담아낼 정도라면, 저작물성이 인정될만하지 않을까요? [▶](#)



로스쿨 창 명예기자 2기를 소개합니다!



천수이 (동아대학교 로스쿨 5기)

국어사전에서 작명한 제 이름 수이는 다를 殊, 다를 뿔을 써 '다르고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덕분인지 제 스스로는 남들과 다른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오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람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회의 크고 작은 범죄들을 보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람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하여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법'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의 로스쿨 생활을 통해 로스쿨 역시 '틀린' 제도가 아니라 법 조인을 양성하는 또 '다른' 제도라는 것과 그 안에 많은 다양한 학생들이 하나의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함께 공유하고 싶어 명예기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로스쿨 생활이지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임민정 (건국대학교 로스쿨 5기)

5기로 입학해서 오늘에까지 자기소개를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래도 자기소개를 해봅니다. 이제 밝히고 싶지 않은 꺾인 삼십대를 보내고 있는 임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를 소개하는 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대나온 여자'이지만 여대 출신이라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여성스러움(?)보다 액정달린 기계와 노는 것을 매우 사랑하는 공대 가는게 나올 뻔 한

처자입니다.(제 열람실 자리에는 학우들에게 빌려주기 위한 전동드라이버가 비치되어 있고 연필꽂이에도 드라이버가 꽂혀 있습니다. 왜 꽂혀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둘, "오십한썰"이나 드신 이승환이라는 한 가수의 23년째 팬으로서 공부시간 외 여가시간에는 가장 쓸모없다는 연예인 걱정(?)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풀며 살고 있습니다. 셋,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법전원에 입학 후 CLS 라는 기독교법가회를 접하게 되어 공부와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되었는데 제가 '명예'라는 이름을 달 수 있는 역할을 얼마나 멋지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법전원 학우 여러분,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남기영 (한양대학교 로스쿨 4기)

#1 글 쓰는 전공을 했고 글 쓰는 일을 하다 왔다. 여러 분야에 걸쳐 책을 읽는 취미도 있었기에 법 역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읽고 쓰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2 이해가지 않는 게 많았다. 주체가 실종된 '판단된다'는 피동형 문장의 범람도 그랬거나 '가사(假使) ~할지라도' 등의 평생 한번 써먹기도 힘든 표현도 난무하는 등 어느하나 익숙한 게 없었다. 주필야독 정진하기는 커녕 주위만 맴돌고 감돌고 에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으니 착잡했다.

#3 사회 성원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 때 언론은 성원 개인이 그 세상을 보는 창이다. 이런 맥락에서 '로스쿨 창(窓)'의 역할 역시 명징하다. 여기에 일익을 보태고 싶다는 마음, 무엇보다 여기서는 좀 편하게 글을 쓸 수 있겠다는 점에서, 이곳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창

LawSCHOOL 창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에서는 '독자 코너'를 이끌어 갈 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로스쿨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로스쿨 창〉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접수기간 상시접수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howe@leet.or.kr
접수시 파일명은 반드시 「독자 코너_이름.hwp」로 작성

- 팩스 접수 02)888-2025 / 원고 상단에 이름 및 연락처, 소속을 반드시 명기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표절임이 판명될 경우 게재 취소

-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박소희 주임
Tel: 02)752-2037 / email: showe@leet.or.kr / Fax: 02)888-2025

아동·청소년의 인권현실에 시선이 머문다면,



2015. 6. 16. 오늘은 “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힘을 보태러 갔다가 더 많은 배움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기로 작정한 지난 2012년 이후 그렇게 하루하루가 제겐 배움이었고 동시에 매 순간이 후회되는 부끄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이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지나칠 수 없었던 아동·청소년의 인권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이슈를 여러분과 나누며, 법조인으로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공익활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이스마트 키핑”을 들어보셨나요?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앱(App)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명의로 가입할 경우 자녀가 접속한 웹사이트, 통화 목록 등을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보호앱 설치도 의무화되었습니다. 또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으나 일방적으로 철거되고, 징계의 대상에까지 놓였던 개포고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여전히 어느 학교에서는 초기에 거울교복을 입으면 오리걸음을 걸어야 하고, 머리카락이 1cm만 더 길어도 벌점을 받으며, 임신을 하면 퇴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입시경쟁에서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한다는 이유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유의 포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OECD 아동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겪는 “체벌”은 어떤가요.

〈2014년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을 자주 또는 가끔 당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무려 45.8%에 달했습니다. 체벌은 엄연히 폭력이자 학대이며, 힘이 있는 자의 힘이 없는 자에 대한 통제수단에 불과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에서”, “사랑해서”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내 아동학대가 이슈화되면서 2015. 3. 27.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학교 내 체벌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용적인 분위기입니다.

회사 내 체벌이 허용되어야 변화가 있을까요? 또한 또 다른 폭력인 학교폭력도 그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오로지 한 학생의 책임일까요. 민주주의, 학생자치가 없고, 소수자는

외면한 채 입시만 남은 학교인 학교폭력의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년에는 학교폭력 대응절차를 회복적·교육적으로 바꾸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률」 개정 입법운동에 참여했는데,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CCTV설치, 경찰관 배치, 생활기록부 기재 등 감시위주의 응보적 대책을 세우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청소년이 2014년 현재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일컫는데, “학교 밖 청소년”은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학교부적응자, 사회적비용, 비행청소년으로 잘못 낙인찍히고 차별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4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몰두했고, 동 법률은 지난 달 2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경험하듯 법률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보자며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에 “대안교육 운동”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연대>의 표현을 빌리면, 대안교육이란 ‘획일적 교육, 비민주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을 극복하는 대안적인 삶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는 불법이라는 위험과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안교육이 합법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게 가장 고민스런 속제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입니다. 아동성폭력 사건에서 성범죄자를 처벌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그리 고민스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인사이였다”는 이유로 15세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접할 때, 성매매가 자발적이었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도리어 범죄자로 처벌하는 판례를 접할 때면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을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 교육부의 “금욕”을 가르치라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 대표하듯 우리 사회가 과연 아동·청소년을 성적 주체(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풀어가야 할지가 무척 고민입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는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비교적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보호소년에 대한 일련의 법률과 제도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관련하여 「소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부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개 이슈를 들으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무척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다”는 말이 자칫 폭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호”한다고 하는 행동이 어느 순간 “통제”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섹시하다’는 칭찬이 여성에게 언제나 칭찬이 아니듯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인권현실이 취약한 것보다 더욱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정작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아동·청소년에게는 표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역사상 노동자, 여성, 장애인의 유권자 운동이 의미하듯 아동·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 「헌법」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19세 미만의 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와 같은 수준에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당가입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활동가 등이 수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현재의 대답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의 합헌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 역시 「1618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에서 실시한 “제1회 6·4지방선거 청소년 투표” 활동에 동참하면서 또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제1회 6·4지방선거 청소년 투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넷모의투표로, 중앙선관위는 이 투표가 공선법을 위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또 경기에서는 10대 청소년 모임 「할 말」 기획단이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한 토론회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 무산되는 일도 있었지요. 부디 다음 선거 전에는 「국제아동인권협약」과 「헌법」, 국제적인 흐름에 맞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좋겠습니다.

허둥지둥 달려온 지난 3년 반을 돌아보면, 앞으로 조금이나마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고민이 됩니다.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지난 시간 동안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동료로 함께 해 준 청소년활동가 분들과 동천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창**



김차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어렵스럽게 인권변호사를 꿈꾸기 시작했고, 운 좋게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 길에는 열정을 가르쳐준 인권활동가, 인권변호사 선배님들, 로스쿨 동료들과 신뢰를 주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 인권변호사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재단법인 동천에서 변호사 선발공고가 났고, 2012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핫이슈

서울대 로스쿨, 학부모 초청 행사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16일 서울대 로스쿨이 자교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법대 학부모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대 음대 비바중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32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현재의 교육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학부모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재민 기획부원장의 참석 교수진 소개와 김종보 교무부원장의 학교 소개에 이어 천경훈 학생부원장이 학생복지와 생활, 졸업생 진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학부모들이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다 같이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학교 측이 정성껏 마련한 오찬을 즐기는 것으로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서울법대 학부모 방문의 날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김하영(명예기자 1기)

인하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 백령도 '섬마을 어린이 로스쿨' 개최

인하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센터장 김영순)는 지역 교육봉사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6일 백령도를 방문하여 섬마을 어린이 로스쿨과 '생활법률특강 및 법률상담'을 진행하였다. '어린이 로스쿨'은 백령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박시환 원장, 김영순 센터장 등 6명의 교수와 김진경 등 9명의 학생 참여로 이루어졌고, 백령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특강 및 무료법률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섬마을 어린이 로스쿨'은 로스쿨 학생들이 어린이들에게 기초적인 법률지식과 법조직역에 대하여 강의를 한 뒤,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사례를 재판 형식으로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 경위, 사무관 등의 역할을 맡아 모의재판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백령도 섬마을 어린이 로스쿨 학생들과 인하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균관대 로스쿨, 미국 LA 카운티 지방법원 Mark. C. Kim 판사 초청 특강 열어

지난 5월 22일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에서는 미국 LA 카운티 지방법원의 Mark. C. Kim 판사의 특강이 개최됐다. “Comparative Study of the Jury System between US and Korea”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대검과 한인검사협회(KPA)가 공동주관하는 서울 총회(5.20~22)에 참석한 미국 고위법조인을 초빙하여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미국의 법제도와 한인 법조인의 위상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 60여명이 참여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법체계(특히, 배심원제도) 비교에 관한 특강과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Mark. C. Kim 판사는 미국 UC Berkely 학사, Cornell대 로스쿨 J.D.를 취득하고, 변호사와 LA 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LA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창**



Mark.C.Kim 판사의 특강을 성균관대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

모호한 그림, 모호한 제목.

진이는 무엇일까? - 그랜트 우드, 아메리칸 고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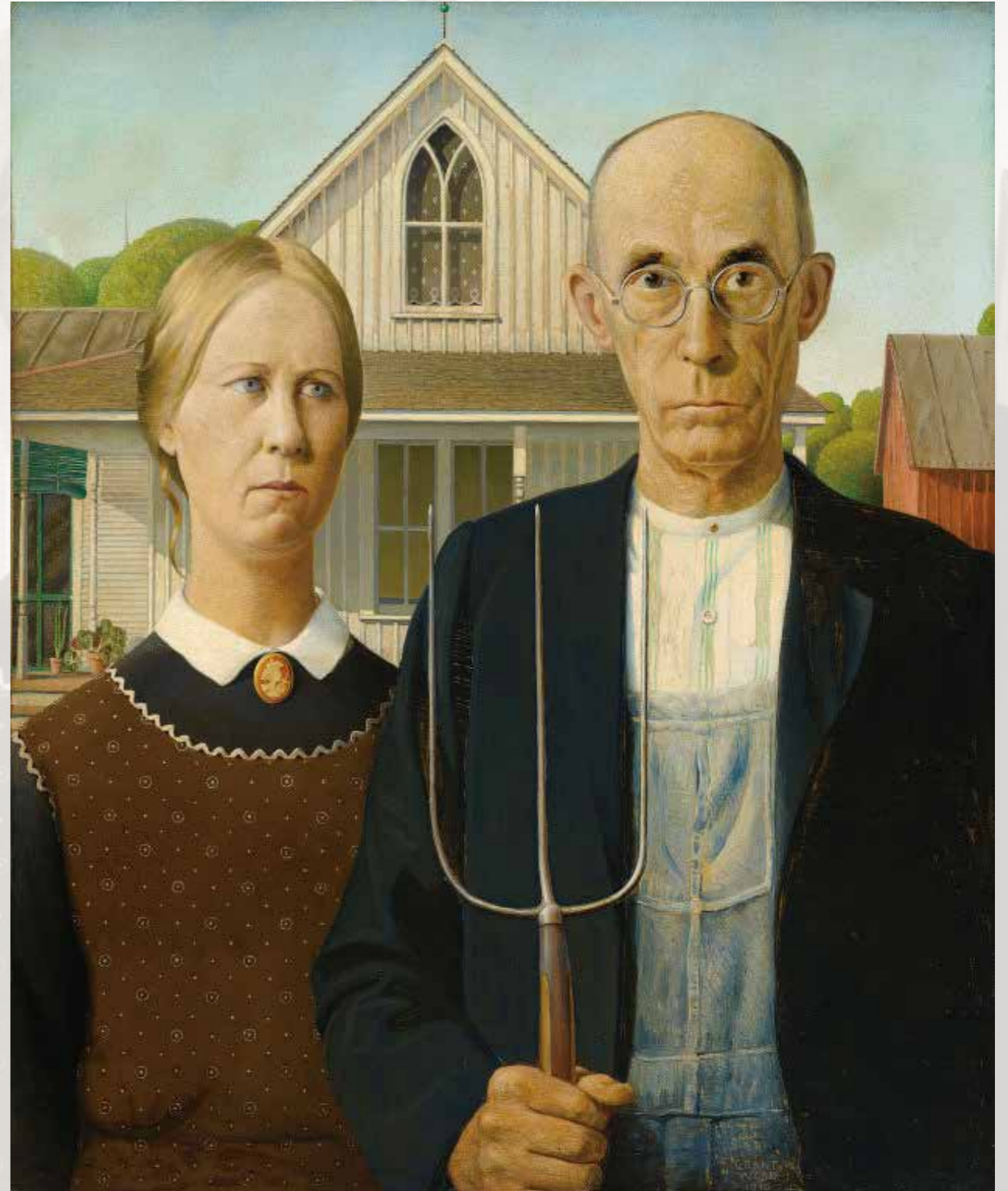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그랜트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작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미술사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만 표현도 모호하고, 제목도 모호하고 이에 대한 작가의 진의도 모호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측에 한 노인이 쇠갈퀴를 들고 있고 좌측에는 한 여성이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배경은 1900년대 초 미국 아이오와 주의 농가입니다.

이 그림은 1930년 시카고 미술관에서 공모를 통해 300달러 상금을 걸고 사들였는데, 이상하게 전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랜트 우드는 19세기의 고딕식 농가를 배경으로 서 있는 남녀를 그린 이 작품 ‘아메리칸 고딕’을 가리켜 단순한 ‘수직 구도의 습작’이라고 말했지만 이 작품은 실제로 대단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목인 ‘아메리칸 고딕’에서 고딕이란 유럽의 고딕 건축양식을 말하며, 여기서는 미국 교회등에 적용된 건축양식을 말합니다. 고딕 건축양식은 중세 후기에 서유럽에 등장하였던 것인데, 원래 ‘고트족의 양식’이란 뜻이지만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선도한 고트족과 직접 관련은 없고 르네상스 시대의 일부 이탈리아 작가들이 뾰족한 첨탑에 아치를 적용한 건축양식을 두고 “아름다운 로마 문명을 파괴한 야만적인 고트족이 지은 건물들”이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고트족이란 게르만족을 경멸하는 뜻으로 부른 말입니다. 건축양식에서 고딕은 시대에 뒤떨어진 양식인데 작가는 왜 하필이면 중서부의 삶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딕을 빌려온 것일까요? 세련되지 않은 양식으로 고향을 표현하는 재밌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림 배경의 건축에서 볼 수 있듯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모습은 뾰족하고 높은 첨탑과, 아치, 커다란 창틀과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그림 제목으로서의 고딕도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경이 고딕양식이어서가 아니라, 미국식으로 변용된 유럽 중세 기독교주의라는 뜻도 있지요. 이 그림에서 고딕 스타일은 반복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창살과 지붕은 물론이고 노인의 바지, 셔츠 등에서 고딕무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원의 미국적 삶과 고딕 양식은 이렇게 조화된 것이죠.

이 무표정한 두 남녀가 서있는 이 그림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일까요? 1930년대 당시 미국은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에 허덕이는 미국인이 볼 때에 검소한 옷차림에 무표정



하지만 쇠갈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미국인의 불굴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미국 중부의 건전한 농촌 문화를 대변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아이콘 즉 아메리칸 고딕으로써 길이 남게 된 것이죠.

그랜트 우드라는 작가는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나 여기서 미술을 가르쳤고, 미국 지역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이 계열의 화가들 가운데 가장 소박한 화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운동이란 도시화와, 기술에 의한 진보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당시 유행했던 유럽의 추상미술을 배격하면서, 농촌의 건강한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화를 그린 미국의 미술운동을 말합니다.

아이오와주에 살던 우드의 '아메리칸 고딕'(1930년)은 유럽의 난해한 추상미술에 싫증을 느끼던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중서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딕식 뾰족한 지붕의 농가를 배경으로 시골 사람들이 서 있는 이 그림은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이오와의 남녀는 완고하게 보이지만, 단순하고 정직하며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들로 묘사되었지요.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추상미술이 도래하였는데, 지역주의 작품들은 편협하고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아직도 미국적 미술의 본질은 사실주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고딕 예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유럽에 뒤지지 않는 미국이라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당대 또다른 사실주의 미국 화가인 에드워드 호퍼가 도시의 풍경, 도시인의 소외와 외로움 등을 표현했다면 우드는 이런 경향에 반하는 중서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인물과 풍경을 통해 미국의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당대 공황의 암울함을 투철한 애국심으로 이겨내자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우드의 지역주의 미술과 같은 미술이 애국적 미술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건초용 갈퀴를 들고 있는 남자는 자신의 일과 땅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기에는 너무 지면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작품도 문제적 작품입니다. 사실 그랜트 우드는 아주 건실한 지역주의 운동가임에도, 혹자들간에는 미국문화를 비판하는 미국문화 풍자(패러디) 작품이라고 의심하고 그랜트 우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즉 두 남녀의 굳게 다문 입과 표정없는 얼굴과 쇠갈퀴로부터, 미국 중부 시골 특유의 편협함과 지역적 편파주의를 비판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남자는 단호하다기보다 안경 너머로 정면을 응시하는 눈과 꼭 다문 입술에서는 고집스러움이 묻어 나오며, 반면 옆을 바라보는 여자의 시선은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탈출하고 싶은 의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자의 기다란 목 부분에 한 가닥 빠져 나온 머리카락과 블라우스에 달린 브로치는 억눌린 관능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노인은 아버지, 여자는 딸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딸이 노처녀인데 딸이 근엄한 아버지에 억눌려 있지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라는 평론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목 뒤로 헝클어진 곱슬머리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옆의 아버지는 그러한 자유롭고 싶어하는 딸의 처녀성을 지키려는 보수적 가장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 보수적 아버지가 딸은 마땅하지 않은 표정같지요?

어쨌든 우드가 사실은 지역사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지역 사람들은 그랜트 우드를 향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의에 우드는 약간의 풍자가 있음은 인정했지만 풍자적 의도라면 그린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드는 그 이상의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침묵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작품은 중서부 시골의 삶에 대한 강한 풍자가 드러난 그림이라는 주장과, 중서부 시골의 삶을 미국적 가치로 찬양한 작품으로 정겨운 마을 초상화이며 금욕적인 시골문화에 대한 지지작품이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드가 풍자적 의도가 있었음에도 애국주의자들로부터 반하는 언사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한 것은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날까지도 작가의 진의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러한 다층적 해석 덕분에 미국의 미술품 중 가장 많이 패러디가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패러디(풍자)란,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주로 익살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인(喜引)》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러디 기법은 비단 예술작품 뿐 아니라 효과적인 개그의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됩니다. 오마주(Hommage)와는 용례를 구별하여 쓰는 것이 보통인데, 전자는 익살 내지 풍자가 주된 목적인 반면, 후자는 그 작품의 원작자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원작의 요소를 차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건 패러디의 좋은 소재가 된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고딕'도 전원 속의 미국인들을 살짝 비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패러디로 인기를 구가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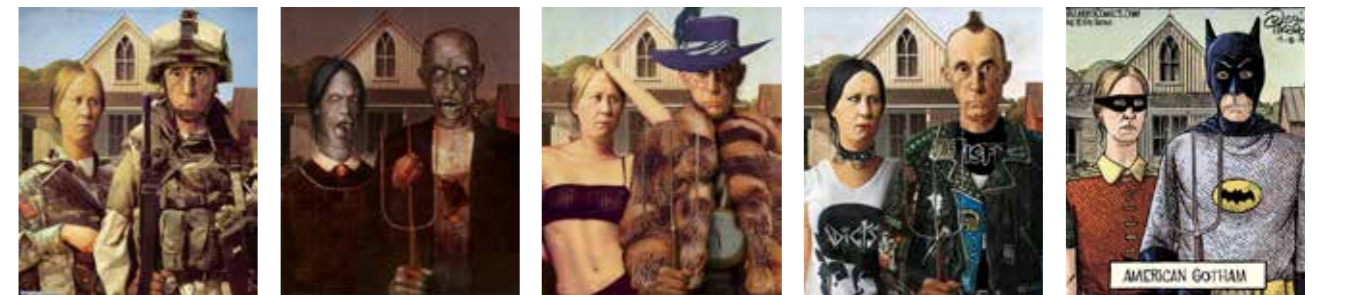


저자 소개
김별다비 / 변호사, 큐레이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셋대박물관 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로 근무했다.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엘지전자 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로 3년여 근무하다 예술인의 정의 구현을 위해 수사에 뜻을 두고 2기 경찰 경감 특채에 응시, 합격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다. 3회 대법원 기인법정변론대회에서 형사변론부문 전국우승을 한 바 있다. 대안공간 정다방, 리각 미술관, 종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미술법을 강의한 적이 있고, 월간 BizArt지와 한국박물관협회지에 미술법 칼럼을 쓰고 있다.

참고문헌

그림 출처 <http://www.artic.edu/aic/collections/artwork/6565>
위키피디아 '패러디' '고딕'
웹진 늘푸른나무, 임이섭, 해설을 곁들인 명화감상(www.webegt.com)
하루 5분 명화공부 (<https://www.facebook.com/5min.painting>)
조선닷컴, [김영나의 서양미술산책] 아메리칸 고딕
블로그 <http://blog.daum.net/yunsimon018/202>
오마이뉴스, 패러디로 유명한 아메리칸 고딕 미국 대중문화 아이콘, 07.11.19



툐아보기

입법에 성공한 법안과 논의되다 폐기된 법안,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법안까지, 특정인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안에 특정인의 이름이 붙는 경우는 크게 ① 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의 이름, ② 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 ③ 사건 피해자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법안을 토포아보자. editor: 박소희



[어학사전]

'툐아보기'는 '살살이 토포아가면서 살피보다'라는 순 우리말로,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뒤지면서 찾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법안 BEST 7 이름이 뭐예요?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안 진행여부] 입법화 돼 시행 중
[법안 포인트] 누군가 살면서 비타500 상자를 건넌다면 의심해 볼 것!

유병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의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2001. 9. 27, 법률 제6517호) 하지만 2014년 발의된 개정안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허점을 보완해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라 할지라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법안 진행여부] 입법화 돼 시행 중
[법안 포인트]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 내새끼한테 물려주기 있기? 없기?

최진실법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아버지 조성민 씨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린다.

[법안 진행여부] 입법화 돼 시행 중
[법안 포인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인의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그 상황에 따른 의료분쟁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할 법률이다. 1989년부터 제정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 과실의 책임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것과 쟁점사항 조율의 미흡 등의 이유로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된 바 있다. 특히 의료분쟁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인 이른바 신해철법은 이해 당사자인 의사 및 병원협회의 반발로 발의 1년이 넘도록 논의조차 못 되고 있다.

[법안 진행여부] 논의 중
[법안 포인트] 마왕이 떠난 빈자리, 의료인의 과실만 덩그러니



장그래법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장그래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으로, '35세 이상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노동자가 4년간 해고 불안 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좋은 의도가 있지만, 대책안 발표와 동시에 일각에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져 왔다.

[법안 진행여부] 논의 중
[법안 포인트] 괜찮아요? 입사했는데 비정규직 4년 동안 해야 한 대서 많이 놀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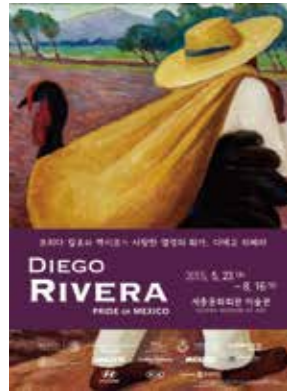


김부선법 [주택법 개정안]

김부선법은 배우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의혹 폭로를 계기로 계량기를 조작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분배용 난방계량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난방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계량기 조작에 따른 형사 처벌도 가능해진다. [창](#)

[법안 진행여부] 논의 중
[법안 포인트]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만 된다면야, 난방열사 김부선 브라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원인은 분노, 탐욕과 같은 인간의 '감정'. 정부는 국민들에게 감정을 억제하는 약을 일률적으로 투여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술품, 책 등을 모조리 불태운다. 영화 <이퀄리브리엄>의 주된 내용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간이 가진 감정을 일깨우는 도구가 바로 '문화적 산물'이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는 문화의 산실 속에서 울고, 웃고, 느낀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니, 마음껏 감동하고 느끼길!



전시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시기간 5월 23일(토) ~ 8월 16일(일)
관람료 성인 12,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7,000원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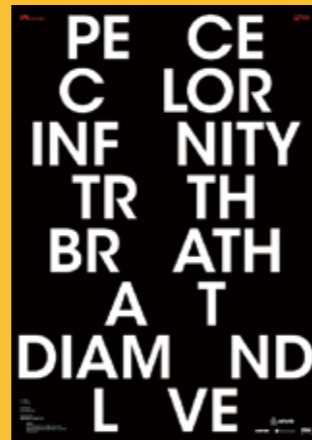
라틴아메리카 현대미술의 아버지, 멕시코의 국보 디에고 리베라 展

<디에고 리베라, 멕시코의 자랑_Diego Rivera, Pride of Mexico> 순회전이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5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개최된다. 디에고 리베라의 초창기 회화 작품 컬렉션이 이번 전시의 주를 이루며, 그의 최초 작품인 <그의 어머니 초상>과 <오리사바 산의 풍경>이 컬렉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전시는 여섯 개의 주요 주제(초창기-스페인 여행-전위예술가들과의 만남-멕시코 귀국-리베라의 초상-러시아 여행)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에는 베라크루즈 미술관 소장품에 더해 세계 10대 사진가에도 이름을 올린 20세기 사진의 전설, 레오 마티즈가 찍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사진, 그리고 영화, 영상, 디에고 리베라의 다큐멘터리가 함께 전시된다.

Exhibition

피스마이너스원: 무대를 넘어서 PEACEMINUSONE: Beyond the Stage

'무대를 넘어서(Beyond the Stage)'라는 부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뮤지션으로서의 자-드래곤이 보여 왔던 가시적 퍼포먼스를 넘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그의 음악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현대미술 작품들을 통해 팝뮤직과 시각예술의 창의적 키워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뉴욕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클 스코긴스(Michael Scoggins), 프랑스 출신의 파비앙 베르쉐(Fabien Verschaere), 2015년 아르스일렉트로 니카 골든니카를 수상한 미디어 아티스트 유니버설 에브리띵(Universal Everything)과 고전 회화와 조각을 디지털 파브리케이션 기법으로 풀어낸 콰올라(Quayola), 조각적 오디오비주얼 작품을 선보이는 소피 클레멘츠(Sophie Clements), 라이트 인스톨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힘의 역학 관계를 다루는 제임스 클라(James Clar)가 본 전시에 참여하여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해외 예술가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3층
전시기간 2015.06.09.(화) ~ 08.23(일)
관람료 성인13,000원, 청소년11,000원, 어린이8,000원
홈페이지 <http://peaceminusone.modoo.at>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이 온다!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는 1975년 초연됐다. 이후 1996년에 리바이벌 돼 19년간 미국 브로드웨이를 지키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 공연의 경우 2000년 초연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10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2015년, 12년 만에 내한하는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미국 뮤지컬의 자존심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오리지널 배우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섹시함을 장착하고, 14인조 오케스트라는 빅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정통 <시카고>를 선사할 예정이니 기대하시길!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공연일시 2015.06.20.(토) ~ 08.08(토)
관람료 VIP석 140,000원 / R석 110,000원 / S석 80,000만원
홈페이지 <http://www.iseensee.com/>

Performance



공연장소 대학로 예술마당 1관
공연기간 2015.5.30.(토) ~ 08.30(일)
관람료 전석 44,000원
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

이 시대의 엄마와 딸을 위한 사모곡 연극 친정엄마

김수로프로젝트 11탄으로 돌아온 최고의 힐링극인 연극 <친정엄마>. 방송작가 고혜정이 쓴 사모곡 에세이인 <친정엄마>는 2004년 초판 된 이래 30만 부 판매된 베스트셀러 연극 "친정엄마", 뮤지컬 "친정엄마", 영화 "친정엄마 2박 3일" 등 수많은 친정엄마 시리즈를 낳으며 흥행 하고 있다. 박혜숙, 조양자, 이경화, 차수연 등의 베테랑 배우들이 이 시대의 엄마와 딸에게 바치는 사모곡이며 모녀시간이라면 꼭 함께 봐야 하는 공연으로 꼽히고 있다. <친정엄마>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디테일한 연기와 대사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재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에는 별 다섯 개로도 모자랄 만큼 감동적이라는 내용의 리뷰가 올라오고 있고 평점 역시 9.7을 기록했다. **창**

LAWSCHOOL NEWS



2015년도 제3차,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회의

지난 5,6,7월 총 7차례에 걸쳐 서울 서소문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는 2015년도 제3차,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영역·검토회의가 진행됐다. 영역별(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 위원장을 비롯해, 영역별 출제위원이 참석해 모의시험 출제 방향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

6월 30일(화)부터 7월 3일(금)까지 2015년도 제3차,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김호정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4명의 영역 위원장(김수갑, 박광민, 박영규, 이재곤)과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의 출제위원 8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 대표단 방문 행사

7월 3일(금)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방문 행사가 진행됐다. 영남대학교 노석균 총장의 축사와 금태환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교내 시설 투어를 비롯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

가로 열쇠

-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0조)
- ②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을 말한다.
- ③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에 걸쳐 베를린교외 000에서 트루먼, 애들리(7월 28일 이전은 처칠), 스탈린의 미·영·소 3거두회담이 열려, 유럽의 전후처리에 관하여 성립된 협정을 말한다.
- ④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그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한다.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000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69조1항)
- ⑤ 증인신문의 방법은 법원이 증인의 채택을 결정하고, 신문할 장소에 출두시켜 선서케 한 후에 신문하는 것이다. 증인으로서 출두시킬 때에는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출두를 명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은 항상 소환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증인이 임의로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4조)
- ⑥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로서, 어원 그대로 복제를 할 수 있는 권리의 합성어이다.
- ⑦ 중지미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형법 제25조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것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의 실행'에 개시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완료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0000이라고 한다.

세로 열쇠

- ①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원리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② 행위자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연 그대로 두면 죽지 않을 사람에게 독을 먹여 살해하고(형법 제250조), 자동차의 운전을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형법 제266조) 경우이다.
- ③ 목적물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 ④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정하고 보장하는 문장으로, 통상적으로 영국의 명예혁명(1688년)의 다음해에 시민의 기득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회가 제정하고, 국왕 윌리엄이 인가한 역사적인 문장을 말한다.
- ⑤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는 약정을 말한다. 재산인수는 회사의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험한 약속이라고도 한다.
- ⑥ 증인이 법률상의 일정사유로 증언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⑦ 대차계약에 있어서 빌린쪽을 말한다. 소비대차(예: 금전대차), 사용대차(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계약)에서는 차주라고 하고, 임대차계약(동산·부동산을 유상으로 임차료를 받고 빌려주는 계약)에서는 000이라고 한다.(민법 제625조·제626조) [▶](#)

가LAW 세LAW 낱말 퀴즈



가: 1. 2. 3. 4. 5. 6. 7. 세: 1. 2. 3. 4. 5. 6. 7.

		1		1																
																				7
3			3																	
															5		6			
6		2																		



제3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 일시: 2015. 10. 31(토) 9:00 ~ 17:00
- 장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가대상: 전국 대학(원)생 및 로스쿨 학생
- 참가자 모집: 2015. 6. 15(월) ~ 9. 11(금)
 특별 이메일 접수(한국해양재단: maritimekorea@hanmail.net)
- 대회 문제 공고: 2015. 7. 15(수), 한국해양재단 홈페이지
- 변론서 접수 마감일: 2015. 10. 2(금) 18:00까지
- 본선 진출팀(8개 팀) 발표: 2015. 10. 16(금) 예정
- 대회 개최: 2015. 10. 31(토) 예정



제10회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논문 공모전

- 응모자격: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 재·휴학생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참가
- 응모주제: 저작권과 관련한 자유주제
- 주요일정
 - 논문제출: 2015. 7. 1(수) ~ 9. 4(금) 17:00까지
 - 예심발표: 2015. 9. 21(월)
 - 본심PT: 2015. 10. 2(금)
 - 본심발표: 2015. 10. 5(월)
 - 시상식: 2015. 10. 23(금)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http://contest.copyright.or.kr>)



2015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

- 응모자격: 변리사, 로스쿨 학생, 일반인 등
- 공모기간: 2015. 3. 20(금) ~ 9. 20(일)
- 공모과제
 - 자유과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 상표·디자인인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자유 선택
 - 지정과제: 특허심판원에서 지정한 과제
- ① 상표분야(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판결) 등록 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적효력
- ② 특허분야(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 PbP 청구항)의 청구범위 해석 관련 판례
- 응모방법: 전자메일로만 가능(iss0125@korea.kr)
- 문의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271)

특별부록

우리들의 희망, 로스쿨



특별전형 미담사례 소개

뇌성마비 장애 로스쿨생, 가슴 찡한 봉사활동

김승일(31)씨는 선천적 뇌성마비로 오른팔을 제외한 사지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인권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



사진출처: 법률신문

이지만 김씨는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아무래도 봉사활동과 함께 공부까지 하다 보면 몸이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학교 시설이 잘 돼 있어 불편함은 못 느껴요. 교수님들과 로스쿨 선배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요."

김씨는 지난해 과외를 하다 알게 된 전북 김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과 '아가페'라는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었다. 약 40명의 봉사단원이 장애인 시설물 관리와 어린이날 봉사활동, 동네 어르신 말벗 봉사 등의 활동하고 있다. "집에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고창의 한 보육원에서 7년 동안 매주 2차례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 대응책을 알려주고, 진로를 모색하고 지원하는 한편 야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꿈이었다는 김씨는 고교 시절인 90년대 말 닥친 외환위기 사태로 아버지가 실직하면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들른 청소년 직장센터에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센터에 나갔는데 인권침해 상황을 많이 목격했어요. 폭행도 하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하기도 하는 등 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었죠. 법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그대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동생의 도움으로 건국대 법대에 입학했지만 병을 앓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사법시험을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원광대 로스쿨의 특별전형에 합격해 법조인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스쿨을 한 학기 다녔는데 몸이 안 좋아져 지금은 휴학 중이에요. 올 2학기에 복학할 예정인데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죠. 고향인 김제시에는 아직 변호사가 없어요. 고향에서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법률신문 2013. 4. 29]

국내1호 시각장애 변호사 "앞 못 보는 불편함보다..."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씨(35)는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을 통감하고 있었다. 대학시절 시나브로 찾아온 시각장애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이다. 직접 장애를 겪으며 느낀 불편함이 그를 변호사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김 변호사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된 것은 2009년이였다.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 눈에 이어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던 2003년부터는 왼쪽 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바깥 쪽 시신경이 대부분 죽어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차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하던 그의 눈은 결국 7년 만에 빛을 잃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일을 시작한 그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문제를 절감한 뒤 로스쿨 행을 결심했다. 변호사가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앞을 볼 수 없었던 탓에 로스쿨에 다니는 3년 간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문서를 소리로 변환한 음성 파일을 활용해 공부했다. 강의를

를 듣다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표시할 수가 없었다. 소리로만 공부하다보니 '신문', '신문'처럼 발음이 비슷한 법률용어



사진출처: 머니투데이

를 접할 땐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다.

"시험 기간 직전에 다른 친구들은 요약서를 사 보고 문제집을 풀기도 하는데 저는 바로 볼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김 변호사는 당시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지난해 3월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변호사계에 입문한 김 변호사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머니투데이 2013. 5. 27]

탈북자 출신 2명 서울대 로스쿨 첫 합격

김일성 체제에 반발해 아오지 탄광촌으로 추방된 가정에서 태어난 임씨는 1998년 북한을 탈출해 2001년 한국에 들어왔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6년 고려대 법대에 입학해 지난 8월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 뒤 독학으로 법학석사시험을 준비해 서울대 로스쿨에 합격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이씨는 14살이던 2000년에 두만강을 건넜다. 이후 중국 학교 등을 다니다 2003년 말 한국에 입국했다. 부산에 있는 지구초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7년 고려대 경제학과에 들어갔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미시시피대학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중국 어능력시험에서 6급을 받을 정도로 중국어에도 능하다. 지난 2월 고려대를 졸업한 뒤 전공을 살려 금융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 이씨는 진로를 고민하던 중 법조인의 꿈을 품고 서울대 로스쿨의 문을 두드렸다.

[news1 2013. 11. 10]

늦깎이 로스쿨생에서 형사소송 전문 로펌 취업까지

1998년 그가 대학생 시절, 학생운동을 하던 동기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접견을 가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런 도움을 못 준다는 생각에 자신의 무력함은 커져갔다. 그가 대학 졸업 후 뛰어든 곳엔 통신사업이었다. 7년 여간 통신업체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조세법, 특허, 상표와 관련된 지식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행정규정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는 사업의 방향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자신이 하는 광고

가 정보통신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관련 서적을 사서 나름 독학을 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 지식에 관심을 가지



사진출처: 법률저널

고, 지식을 쌓아갔던 것이다.

그러던 중 로스쿨 도입 소식을 듣고 평소 꿈꿔 왔던 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법적지식을 쌓고 나면 아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무색해 버릴 만도 한데, 대학시절 수감생활을 하던 동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공과는 상관없었지만 꾸준히 법 지식을 쌓는데 관심을 보여 왔던 그는 그렇게 로스쿨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다.

"운이 좋게 로스쿨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사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는 법학이수학점이 필요했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로스쿨을 나오면 그래도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 차 있었다. 로스쿨에 입학할 당시, 임병후 변호사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이미 가정도 있었다. 사립대 보다는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 쪽을 알아보는 것이 어려모로 가계에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었다. 전국 로스쿨들은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의 혜택을 내세웠고, 그 중 강원대로스쿨은 전액장학금 제도를 내걸었다. 또한 소수의 인원으로 교육을 한다는 점이 그가 생각하는 조건과 꼭 맞아 들어갔다.

임병후 변호사가 생각하는 로스쿨이란 법조문이나 판례를 맹무새처럼 외우는 과정이 아닌, 다양한 실제 사건들을 어떻게 실정법에 적용시켜야 되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다. 3년이라는 로스쿨 생활이 법학을 공부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법학을 배울 자제를 익히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다. 현재 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일호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법률저널 2014. 5. 9]

만학도 변호사의 꿈 '로스쿨'에서 이루다

"만학도라고 불리면서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후 꿈에 그리던 변호사

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충북대 로스쿨에 입학해 동생같은 동기생들과 함께 서로 이끌어주며 변호사라는 꿈을 이룬 양원호(50·사진) 변호사의 체험기가 인기다. 법대에 재학하면서 사법시험 1차 3회 합격을 이뤄냈지만 아쉬움만 남긴 채 가정을 꾸린 후 접었던 꿈을 ‘로스쿨’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해 꿈을 이룬 양 변호사는 “아버지가 내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사진출처: 충북일보

충북대 로스쿨(09학번)에 입학 후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 3년내내 공부에만 열중하던 그는 마지막 관문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2012년 10월 변호사 개업을 하고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충북대 로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충북대는 바이오 분야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서 부터다.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맞물려 미래의 다양한 직업선택에 큰 강점으로 떠오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청년사업 이사직을 맡고 있는 양 변호사는 충북권 변호사들의 협회 참여를 독려하고 모색하는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북일보 2015. 3. 25]

최연소 로스쿨 합격생, 동아대 로스쿨 입학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손빈희(19·사진)씨는 2010학년도 로스쿨 최연소 합격생이다. 그는 지난 2005년 14세의 어린 나이로 대입검정고시를 합격한 후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대학을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지난해 봄부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 1년 만에 당당히 예비법조인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손씨는 원래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에 로스쿨 입학쪽으로 마음을 돌렸



사진출처: 법률신문

단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성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주 느껴요. 로스쿨에서 실무와 함께 법학공부를 해 전문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기르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손씨의 아버지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자 딸을 위한 제도라며 적극 추천했단다.

[법률신문 2010. 1. 19]

“공감하는 판사가 꿈”... 시각장애 극복한 재판연구원

방금까지도 보이던 풍경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급작스럽게 닥친 사고 이후 눈앞에는 암흑뿐이었다. 법조인의 꿈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사고가 꿈까지 빼앗지는 못했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인 김동현(33)씨는 20일자로 서울고법 재판연구원(로클럭)에 임명됐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김씨는 민사 34부에 배치돼 2년간 재판부를 보조하며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부산과학교등학교,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를 나온 김씨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던 2012년 5월 불의의 사고로 하루아침에 양쪽 시력을 모두 상실했다. 사고에 대해 아직 언급을 꺼릴 정도로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눈은 잃었지만 꿈까지 잃은 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어서였다. 1년을 휴학한 김씨는 다시 학교에 복학했다. 후배들과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는 올해 후배들과 함께 로스쿨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로클럭에 임용됐다.

[연합뉴스 2015. 4. 19]

“전(全)맹인도 변호사시험 응시할 수 있냐고요?”

A씨는 대학원생 시절 갑자기 원인불명으로 시력을 모두 잃은 뒤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인권변호사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진학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과연 무사히 시험을 통과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사진출처: 세계일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전맹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점자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따르면 전맹인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음성지원 컴퓨터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도 맹인이 아닌 응시자보다 2배 더 많이 주고 있다. 전맹은 응시자는 컴퓨터를 통해 문제를 듣고,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한다. 점자문제지를 통해 문제를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성된 답안 파일은 일단 출력한 다음 법조인력과 직원들이 다시 손으로 일반 답안지에 옮겨 적는다. 채점위원들이 장애인이 작성한 답안임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행여 글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달필이나 약필이 아닌 명료하고 보통 글씨체를 가진 직원이 옮겨 적는다고 한다. 보통 글씨체를 가진 직원을 뽑기 위해 법조인력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적시험을 친 적도 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당당히 합격했다.

[세계일보 2015. 5. 4]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던 OO희(여)는 2009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차상위계층)으로 입학하였다. 입학 후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그 외에도 매 학기 장학금(2개 학기 동안 학기당 각 300만원, 4학기 동안 월 각 50만원)을 지급받아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교통사고로 생활비를 벌며 공부하던 김OO(여)는 2009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3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외에, 장학금으로 4개 학기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공부한 끝에,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OO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지방 소재 OO대학교를 졸업한 OO훈(남)은 대학졸업 후 생계를 위해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다, 2010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기초생활수급대상자)으로 입학하여, 3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외에, 장학금으로 1개 학기는 300만원, 5개 학기 동안은 매월 5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무사히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변호사실무수습을 받고 있다.

첫 학기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당장 다음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워진 OO원(남)은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다 지도교수와 장학운영회의 교수들을 찾아가 다음 학기에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받았고, 충실히 학업 생활에 전념중이다.

만 40세의 나이에 2010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OO주(남)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전문 교수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에 법무법인 OO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직장을 다니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결혼을 한 OO영(여)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출산을 하였다. 재학 중에 결혼을 하여 학업과 출산, 육아의 병행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숙사 제공의 배려를 통해 가능하였다. 현재는 조달청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OO제(남)는 2011년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장애인 특별전형의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의료는 동네에도 병원이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을 떼이거나 단순한 폭행사건이 있을 땐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참는 것이 현실이구나.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하였지만,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해도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수년이 걸리는 시험을 뒷바라지 해줄 집안 형편도 아니었고, 합격여부가 불투명한 사법시험의 특성 때문에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꿈을 접어가던 중 로스쿨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계속 변호사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다. **창**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승일

1)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좋은 추억이 되지만, 당시에는 때론 가혹하리만큼의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배울게 많고, 모자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역경들을 이겨내고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시는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같이 회상하고, 지난 날 꿈꾸셨던 바램들을 떠올리실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모자란 글에 양해를 구하며, 앞으로 응원과 격려, 따듯한 질책 부탁 드립니다. 그럼 제가 넘어 왔던 고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정확히는 우측 손을 제외한 삼지가 신경 마비로 인하여 불편합니다. 어릴 때 주된 기억들은 어머니의 등과 병원 침대 위가 무대였습니다. 늘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았고, 무서운 기구들에 몸을 맡겼고, 의사 선생님과 다른 환자들이 유일한 대인 관계였습니다. 그 때의 바램이라고는 잠잘 때만이라도 다리와 허리에 달린 보조기를 떼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 날에는 교회와 점집을 왕복하였습니다. 기도원이란 곳에서 안수를 받는다며 목 뒤의 살을 일주일 간격으로 손톱으로 파 긁어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면서도 어린 마음에 아멘을 외쳤고, 점집에서 악귀를 쫓는다며 손바닥을 칼로 긁을 때도 복 달아난다고 웃으라는 무당의 말에 웃었습니다. 7살 때 죽은 신경과 살아 있는 신경을 이어주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희망적인 뉴스를 보신 부모님께서서는 빛을 내어서 서울

에서 수술도 시켜주셨습니다. 덕분에 6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뼈뼉뼉 조금씩이라도 '걷는다'라는게 참 신기했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께서는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덩치가 점점 커지는 저를 업고 다니시느라 허리에서 늘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번번이 흩어지고, 고통에 우는 어린 아들을 볼 때의 어머니 마음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덜 슬퍼하시게 고통을 참는 정도만 감당하면 됐습니다.

그 당시는 장애인 기관에 대한 인식도 안좋고, 실제로도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가 심했으며, 폐쇄적인 정보로 인해 부모님께서서는 저를 일반학교에 진학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거절당하고,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시골 학교에 겨우 입학하였습니다. 유치원도 못 다녔고, 그전까지 한글은 버스나 표지판, 숫자는 차량번호판을 통해 겨우 덧셈 뺄셈만 배웠습니다. 저학년때는 어머니와 거의 학교 생활을 같이 했고, 고학년이 되어 제 치료를 위해 따로 살았던 여동생이 입학하여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빼고는 이야기할게 별로 없을만큼,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입니다.

3) 다행히 몸은 조금씩 나아졌고, 중학교 때까지는 전교생 50여명인 시골에서 다녀 교우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해가 지기 전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구슬치기나 비석치기 같은 놀이를 했고, 봄가을에는 논밭에서, 여름에는 산에서 놀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책도 많이 읽었으며 여러 백일장이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탄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시

내에 있는 덕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으로 매일 기숙사에서 새벽 2~3시까지 공부했고, 2학년 때 다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찰 결과 척추의 연결 고리 하나가 없어서 통증이 유발되어, 엉덩이에 있는 뼈를 이식하는 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휴학하게 되었고, 수술을 받았으며, 완쾌가 될 무렵 다른 의미로 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서 IMF로 인하여 실직을 당하셨고, 퇴직금도 많은 부분을 사기 당하셨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 매일 술을 드셨고,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순차적으로 행하셨습니다. 도끼로 방문을 찍으실 정도가 되어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형식적으로 와서 보고 가는게 전부였습니다. 알콜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도 여러번 시켜 보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어머니께 심하게 폭력을 행사하셨을 때, 집을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19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4) 어머니, 동생과 집을 나올 당시 가지고 있던 1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잘 곳과 먹을 곳이 필요했고, 하루하루가 걱정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조금씩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었고, 동생은 너무 어렸으며, 당노가 있으신 어머니는 수술이 시급할만큼 시력이 안좋아지셨습니다. 3개월을 길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역 대합실, 다리 밑, 가끔 각자의 친구의 집, 여인숙 같은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겨울에는 추위와 싸웠습니다. 아폴로 눈병을 고등학교 1학년인 여동생이 걸렸을 때, 피시방 구석에서 자다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편의점 폐기물 음식을 남겨줬다 주는 친구 덕분에 끼니를 이었고, 어느 때는 모르는 분께 동냥도 하였습니다. 세 가족이 하루를 컵라면 1,2개로 보낸 적이 허다했고, 무슨 일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그 다음에는 통닭 배달, 케이블 영업, 대리운전 등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적응도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졸업장을 위해 하루 2,3시간만 있었고, 고3인 20살 때에는 아르바이트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다 보니 한 칸짜리 쪽방이지만, 세 가족이 발 뺄고 잘 수 있을 공간이 생겼고 그 때의 감동과 안도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으니 10군데 정도

찾아 가서 사정해야 한두군데에서 일하게 해주었고, 그마저도 임금을 깎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약속한 금액과 다른 일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수습 기간이라고 한 달간 무료로 일하고 해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있으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였고, 저는 장애인 보호 기관에 배정 되어 거기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장애인 인권 침해는 심각했습니다. 욕설과 구타는 기본이고, 수급비 갈취와 과잉 노동,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건 임신한 여성의 중절 수술과 아예 임신을 못하게 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걸 알지만 저는 힘이 없었고, 관계 기관들은 제 말을 무시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그 기관의 담당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어쩌면 제가 겪었을 지도 모르는 일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아는 여동생이 집단 강간을 당하여 자살을 하였는데, 경찰관에게 들은 답변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채무로 인하여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길래 말리려다가 집단 구타도 당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맞은 합의금으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좌절감과 좌책감이 되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21살 때 동생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부담이 줄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월세방 값을 아끼려고 외갓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5) 그 당시 무슨 용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중에 100만원도 없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큰삼촌께서 무리하셔서 처음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장학금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학비 걱정은 없었지만, 가족들과 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 때 2년 넘게 못 보던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월화수목은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금토일은 지방에 내려와서 과외와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여동생은 20살이 되자마자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였고, 볼 때마다 손과 발이 부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병원비가 감당 안될 즈음에 수급자 선정을 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조금

씩 받아 부담이 덜었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과외에 집중하였습니다. 3학기 다니고 휴학한 후, 3학기 동안 생활비를 모아서 복학하고, 또 3학기 다니고 휴학해서 돈벌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매일 8시간씩 일주일 내내 과외를 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빚도 모두 갚았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십년 동안 신 날이 합쳐서 한 달이 안될만큼, 일주일 내내 성실함 하나로 일했습니다. 대학교 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러 신림동으로 떠나는 동기들이 부러웠습니다. 학원비랑 고시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든다는 동기들의 말은 제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한 달이라도 일을 쉬게 되면 부모님의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를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애들은 대학교 다니면서 멋내는데, 추리닝 하나로 버티면서 식당 일을 하는 여동생의 책임을 가중 시킬 수

도 없었습니다. 너무 낮은 확률을 위해서는 포기할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6) 대학교 때 재단의 장학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 2회 멘토링을 하는 게 장학금 수급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학생들을 모아서 시설 관리나 교류같은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3년 정도 꾸준히 하다보니 봉사활동 시간이 700시간이었고, 연계하여 교류한 5개 기관과 학생들의 총 봉사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꾸준히 많은 사람들과 연계하여 더불어 가는 세상을 만드는게 꿈입니다. '개천의 용'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천에 있어

보면, 개천에 필요한 것은 용이 아니라 개천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 사는 곳에 개천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 노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인 김제는 인구 10만여명이고 노인과 다문화과정도 많고, 시골 가정 폭력이 빈번한데도 변호사 사무실 하나가 없었을만큼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마땅히 보호 받아야될 권리가 법을 통하게 되면, 먼 이야기가 되고 고비용이며 심적 부담이 더해 집니다. 희망의 사다리와 개천의 용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 나름 수년간 경험과 공부를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7) 로스쿨에 가겠다고 말하고 다녔을 때마다, 사람들은 왜 사법시험을 안보냐는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정확히는 앞서 말했다시피 못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니라 대학생마저의 꿈도 겨우 이론 저에게는 과분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로스쿨 3학년입니다. 제도의 역이용과 기득권의 흠집내기로 인하여 로스쿨 생활동안에 하고 싶었던 진정한 인권 활동이나 관련 법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평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한 수험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육원, 자폐아동 기관, 노인복지 기관의 봉사활동도 뒤늦게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한 여동생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명절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등에 간식을 조금씩 선물합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 시키는 법조인이 되려면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래도 법조인이 많아져야 국민과의 밀접도가 높아지며, 국민 평균의 법의식이 향상 되어 범죄에 노출 되거나 인권을 침해 받는 사람이 줄고, 흑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도 손쉽게 구제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3시간 일해서 생활비만 벌고, 새벽 2시가 넘을 때까지 공부에 매진합니다. 처음에 기사로 로스쿨에 대해 들었을 때는 고비용에 덜컥 겁이 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등록금을 걱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학 중인 원광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장학금 수급률이 높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학교 강의에 충실하고, 기타 실무 관련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모자란 부분은 튜터링이나 학교 지원을 통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들도 책 한권 살 때마다 여러번 고민할 정도로, 언론

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이기도 않습니다. 매일 열람실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때는 날을 안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업에도 매진합니다. 만약 학우들이 부자였다면, 저부터도 박탈감이나 상실감에 못 버텼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일정 부분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절대적 빈곤 계층에게는 로스쿨만이 소위 개천의 용이 되는 길입니다. 하물며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도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견에 휩싸여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해결책을 간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가 바라는건 욕심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지원해준 국민, 학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이루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받아 왔듯이 말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오늘 밤에 좋은 꿈꾸시길 기원합니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와 로스쿨 제도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우석



로스쿨 원우 여러분. 학업으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인 만큼 문제점 또한 잘 알고 계시기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보기 위해서라도 사시가 존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시가 존치된다면 '사시 = 정당한 제도', '로스쿨 = 돈스쿨, 음서제'라는 부당한 이분법이 유지될 것이고, 로스쿨 제도를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나 노력이 이뤄지기는 커녕 과도기적 문제점들이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제도를,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노력만 뒷받침 된다면 장점이 더욱 많은 제도가 될 수 있는 이 제도를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 처음 생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처지가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사시가 존치된다면 로스쿨은 반쪽자리 제도가 될 것이고, 단점만 잔뜩 부각되다가 끝내 없어지는 것이 시간문제임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저는 로스쿨제도가 온당한 평가 한번 받아 보지 못한 채,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

지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오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겨우 도입된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를 건너치는 존재', '현대판 음서제'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없어진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다시는 도입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순간을 증언할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로스쿨 제도를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우리나라에 몇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로스쿨 제도의 본질과, 이 제도가 가진 진정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야 할 책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작은 일에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소신이야말로 우리가 법조인이 되고자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고작 이 정도 일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럽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역풍을 우려하여 침묵하는 동안 쌓인 오해들이 어느덧 로스쿨 제도 자체를 집어 삼킬 만큼 커졌습니다. 이제 침묵하기보다는 로스쿨에 대한 더 정확한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주위에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원문 링크 : <https://www.facebook.com/wooseok.noh.3/posts/706472626129869>

로스쿨에 대하여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어있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니, 불이 붙고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불을 붙이고 있는 게 맞다고 보아야 하겠죠. '희망의 사다리'와 '개천의 용'이론을 내세우며 사법시험 존치, 나아가 로스쿨 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그분들이 절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걸어 올라가 ‘개천의 용’이된 대표적 인물인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로스쿨을 도입한 것일까요?”

불을 붙이는데 여념이 없는 그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로스쿨에 대한 오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에만 사법시험 존치 의안이 4건 발의되었고, 최근 여당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론으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치러진 관악(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출마한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노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시험의 존치가 고시촌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제도는 표 몇 표를 더 얻어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해도 될 만한 무가치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경을 딛고 어렵게 꿈을 이루신 변호사 선배님들일수록 로스쿨 제도가 못마땅해 보이실 것입니다. 서울변협 회장님이신 김한규 변호사께서 사법시험이 “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꿈을 이룬 선배님들의 위대한 성취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고시원에 딸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어렵게 공부하며 12년 동안 노력한 끝에 변호사의 꿈을 이뤄내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 승리'입니다. 오직 노력의 '영웅'들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만

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거나 '영웅'이 되는 것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의무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여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한 대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와 고시공부를 병행하며 10년 넘게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법률가가 되고자하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에는 선배님들처럼 '위대한 영웅'들은 아니지만, 로스쿨이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과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한 '용기'는 없었지만 로스쿨 덕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평범한 학생의 한사람으로써,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썼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돈스쿨'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미지'들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온당한 평가는, 더 나은 법률가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로스쿨은 이 땅에 처음 생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온갖 반대 끝에 겨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도입된 제도가 도입 직후부터 온갖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린 끝에 제대로 시행되어보지도 못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건너치는 존재', '현대판 음서제'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누명을 쓴 채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조만간 로스쿨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다시는 도입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 온 사방에서 로스쿨을 비난하는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를 직접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저 스스로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ですよ. 그래서 미려하게나마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 다소 긴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공유' 또한 적극 환영합니다). 또췌록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I. 로스쿨에 대한 오해들에 대하여

1.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로스쿨은 돈스쿨이다. 의심의 여지없는 참인 명제처럼 통용되는 이 말은 어떤 유래로 생겨난 것일까요? 아마도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쿨을 싫어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강조하며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로스쿨 과연 비쌀까요?

1) 로스쿨이 반드시 비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스쿨 도입이 처음 논의 된 것은 90년대 초반 사법개혁논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이 논의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로스쿨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법개혁 논의 당시 300명씩 배출하던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3000명으로 늘려서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기존의 법률가 양성 시스템으로는 그만한 인원을 육성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며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사법연수원생들이 '월급'을 받으며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올해 사법연수생의 월급은 1년차 1,738,000원, 2년차 1,816,000원입니다. 대략 18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년이면 월급만 2천160만원입니다. 최근 단계적 감축으로 인해 연수생 수가 줄긴 했지만 2000명의 연수생이 교육 받을 당시 90명 이상의 교수진이 있었으며, 사법연수원은 강의실, 도서관, 기숙사를 갖추고 있고 모든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교육비를 '아주 저렴하게' 1년에 1인당 1000만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사법연수생 1명을 교육하기 위해선 1년에 3,160만원, 사법연

수원 한해 입학 정원인 1000명을 기준으로 2개학년을 1년간 교육하기 위해선 73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사법연수원은 한해에 최대 1000명의 변호사 밖에 배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로스쿨과 동일하게 비교하려면 한해에 2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2를 곱하여 1464억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공정합니다.

(*법전협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운영비용은 1000명기준 1년 880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1760억원이 필요합니다.)

2013년 기준 평균 연간 로스쿨 등록금은 1533만원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 정원은 한해 2000명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2000명의 등록금을 모두 합쳐야 한학년에 306억6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은 등록금 대비 4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0%인 183억9600만원만 확보해도 로스쿨 한학년을 전액 장학금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551억 8800만원만 있으면 3개학년 전체를 무료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위 로스쿨 평균 등록금 자료는 2013년 7월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입니다. 윤의원님께서 저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1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다닐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로스쿨은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인 현재까지도 장학금 지급 비율(2013년 : 39.64%)은 제자리걸음" 아마 이런 지적을 하며 서민의 대변인을 자칭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등록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겠지요. 관악(울)에 출마하셨던 의원님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셨던 것과(고시촌 경제에 대한 걱정을 제외하면)아마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높으신 분들께서 그렇게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지 못할까봐 걱정되신다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 1년 운영비용의 1/3만 확보하여 로스쿨 장학금을 확충해 주면 전국의 로스쿨 생들이 공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 세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진정 서민들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제도나 로스쿨제도나 똑같이 변호사를 양성하는 제도인데, 어째서 그 비용을 로스쿨 제도에 쓰면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러한 비교를 한 이유는,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 시험제도 중 어느 것이 저비용이고 어느 것이 고비용인가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기억해 주시사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는 반드시 비싸다"

라는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본질적으로 비싸야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법연수생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 정책적 결단에 의해 전액 무료로 이뤄졌던 것처럼, 지금 로스쿨이 등록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로스쿨 등록금을 정책적으로 '비싸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니까' -> '로스쿨은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 '따라서 없어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비난하시는 분들'께서 진정으로 그것을 염려한다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힘써 주십시오. 1년에 500억이면 전액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비싸서 나쁜 제도라니 너무 치졸한 비난 아닙니까?

2) 로스쿨은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로스쿨 등록금이 1년에 1500만원 가량인 지금처럼 유지된다 고 하여도, 사법시험보다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의 준비 비용은 얼마일까요? 보통 이런 논의를 할 때면 사법시험 준비비 필요한 학원비, 숙식비, 교재비 등을 합쳐서 로스쿨과 비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왜곡된 비교입니다. 로스쿨에 다니면 학원비 대신 등록금을 내야하고 로스쿨생도 밥은 먹어야하며, 잠도 자고 교재도 사야합니다. 흔히 이뤄지는 저런 비교는 공정함을 가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지요.

흔히 말하는 '강남 8학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같은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과 과외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물론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낌없는 투자"를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끊임 없이 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수는 기본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삼수에 나아가는 것에도 (최소한 경제적인 면에서는)주저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고시'는 무엇보다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가 모든 과정을 보상하는 시험이기 때문이지요. 합격할 때 까지 집안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돈 걱정하지 않고 학원 강의를 수강하고 비싼 수험서적들을 구매하며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생A와, 1~2년 정도는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학생B와, 당장 내가 고시생활을 시작하는 경우 밥 사먹을 돈조차 없는 학생C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B, C의 학업 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Q1. A, B, C 중 누가 사법시험이라는 험난한 관문을 통과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획득할 확률이 높을까요?

Q2. A, B, C의 경쟁이 같은 시험 문제를 푼다는 이유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Q3. C는 과연 사법시험에 도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사법시험 이면의 '위장된 평등'에 가려진 불공평한 '비용'입니다. 사법시험의 비용 계산에는 '합격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추가적 요소로서 포함 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의 평균 수험기간은 4년~5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1년에 필요한 예상 비용)*4를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계산은 A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B는 거기까지 가 볼 수 없을 것이고(다만 B학생은 2년 안에 붙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볼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C는 사법시험에 도전해보기조차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한 학생들 중 '탁월한 두뇌와 끈기를 가진 영웅'들이 나타나서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과외랑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는 감격을 누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A, B, C의 학업능력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걸고 '모험'할 것을 강요받아야 하나요? 왜 가난한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것 인가요?

이것은 사법시험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은 의심의 여지없는 고비용 시험입니다. 법조인 제도가 비싼지 아닌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그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된다고 가정 하에 비용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로스쿨이 아니었다면, 저는 변호사라는 목표에 도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등록금이 비록 저렴해진 않지만, 일단 로스쿨에 가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해서 낼 수 있고, 정 안되면 휴학을 해서라도 벌어서 내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진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로스쿨에 가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예로 의대 등록금이 다른 학과 등록금보다 비싸다고 해서, 가난한 학생이 의대 진학을 포기하고 다른 학과에 진학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사

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저렴한 이유이자, 변호사시험이 반드시 의사 국시와 같이 '자격시험'으로 치러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고 해서 로스쿨이 더 비싼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스쿨제도는 C와 같은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입학 시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B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에게도 형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옹호론자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서민'을 대변하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로스쿨이 돈스쿨이고, 그곳에 다니는 학생들이 마치 전부 부유층 자체여서 입학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경제력과 상관없이 정정당당하게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진정 서민들을 위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서민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사법시험 존치'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시험도 양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서민들을 걱정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로스쿨을 없애버리려고 궁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로스쿨 장학금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가난한 학생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제도는 공정하지 못하다?

1) 등록금이 비싸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내용이므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야만 할 이유는 없으며 이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1533만원에 로스쿨의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률인 40%를 제하면, 로스쿨의 실질 등록금은 연 919만8천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한 제 출신학부(서울 소재 사립 공과대학)의 2014년 실질 등록금은 9,260,000 - 2,780,000(교내+교외

장학금)/재학생수) = 6,480,000원입니다(정보 출처 : 대학알리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대학원의 비싼 등록금 문제는 로스쿨 홀로 욕먹으며 짊어지고 나가야 할 짐이 아닙니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된다고, 그것이 공평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시험장'에서의 평등과, 시험 자체의 공평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법시험의 평등은 다만 '시험장'에서의 평등일 뿐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시험장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사법시험은 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시험에 도전하는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2) 로스쿨생 선발 절차는 비교적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이다?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음서제'라는 표현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 로스쿨 생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공평하게 선발된 자들이다.

- 로스쿨 생들은 돈이나 뒷배경으로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종종 이런 기사를 흘리며 그런 생각을 부추깁니다(대체 이런 정보는 어떻게 조사한 걸까요? 정보 출처는 다만 '취재 결과'라고 되어있습니다. '유력인사'의 범위가 좀 의도적으로 넓게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유력 자녀 뽑는 '로펌 음서제'... 로스쿨父子 사제관계도", 동아일보, 2014.9.1. 이런 방식의 여론 호도는 전형적인 방식의 선동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논증은 제외한 채 '냄새만 풍기고'있기 때문입니다. 선동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유력인사 자제들이)그만한 실력과 자격이 없음에도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회사에 취직하였는가?”

기존의 제도인 사법시험 시행 당시 사법연수생 중 유력인사 자제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일까요? 유력 인사의 자제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에 비교할 때 저기사의 표는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통계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변호사 시험 1회 ~ 3회를 통해 배출된 변호사 수는 1회 1,451명 2회 1,538명 3회 1,550명 합계 4,539명입니다. 이제 저기사의 표를 다시 보아 주십시오. 영사, 대사의 자녀들까지 끌어 들어가며 만들어낸 표 치고는 다소 궁색하지 않은가요?

로스쿨에는 한 해에 2,000명의 학생들이 입학합니다. 그 중에는 부자인 학생이 있을 수도, 가난한 학생이 있을 수도, 부모가 유력인사인 학생이 있을 수도, 그저 평범한 집안에 자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절대 다수가 정당하게 실력으로 평가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력만 있다면 그 학생들이 다만 부모가 '유력 인사'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입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대형 로펌에 몇 명 입사한 중에 30명이라는 것인지, 그 중 몇 명이 실력이 없음에도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정당한 절차를 걸쳐 입학/입사한 학생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비겁하게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식의 '냄새만 풍기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선동에 불과합니다. 정당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선동'이 아니라 '논증'을 해야 합니다. '선동'은 로스쿨 제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 나아가 우리나라 법학교육 제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의혹 제기는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1. 로스쿨 입시는 공정하지 못하다.
2. 로스쿨 출신은 (눈에 보이는)실력 지표가 없다.

1)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며, 2)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법원과 검찰은 인턴과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로펌도 서류 심사,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자들의 업무능력이나 과제 작성능력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언제까지 '획일화된 평가와 시험 성적'만을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면적 평가 노력이 이뤄지는 것은 '시

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 변화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평가 방법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획일화된 시험 성적'이 없더라도 평가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양성의 존중'이란 요원한 일이 됩니다. 오용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한다면 최선이 아닌, 차악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자료 : 동아일보에 따르면 법조인 자녀 비율이 사법시험이 7년간 6,000명 중에서 69명, 약 1.15%. 로스쿨은 3년간 4,500명 중 71명인 1.57%이라고 합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은 공정한 선발 절차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 서류 심사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가린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합니다.(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면접 시 서류를 보며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인적사항은 가린 서류를 지참하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면접을 본 두 학교는 모두 면접관3, 피면접자1의 대대일 심층 면접을 진행하며 크로스 체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한 학교는 면접관중 외부 인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장치를 도입하면 됩니다. 모든 로스쿨로 하여금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할 것, 면접관중 외부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 서류에 특정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부에서 이를 감사하도록 할 것 등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이제 겨우 네 번의 졸업생을 배출해 낸 신생 제도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모든 비판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을 마치 '로스쿨 제도의 본질적 특성'상 개선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쿨에는 ~한 단점이 있다
→ 따라서 로스쿨은 실패다.”

단독으로는 단 한번의 졸업생도 배출해보지 못한, 제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자격시험'은 시행해보지도 못한 제도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이고 무성의한 논증들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비판을 하려거든 결론을 정하고 이유를 생각해내서는 안됩니다. 로스쿨에 대한 비판을 들으실 때, 그것이 과연 로스쿨 제도의 본질상 어쩔 수 없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과도기적인 문제점에 불과한 것인지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로스쿨생들은 실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글에서 로스쿨생의 실력 논란에 대해 길게 논증하는 것은 1) 로스쿨 도입 직후 충분히 이뤄진 논쟁의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며 2)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실력으로 인정받고 계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선배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 도입과 동시에 사법시험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사법시험의 폐지가 늦춰진 덕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본의 아니게 취업시장에서 비교당하며 실력과 장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백해일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심어린 시선과 멸시에 굴하지 않고 곳곳하게 실력으로 가치를 입증해 주시고 계신 로스쿨 선배님들께 이 글을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법조 각 직역에서 로스쿨 생들을 채용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실력을 이유로 로스쿨을 비판하는 이야기들 또한 과거와 같이 많이 들리지 않는 것이야 말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나름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교육 과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디 더 좋은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로스쿨이 무능하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하는 의대 또한 본과 4년의 의학 교육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년이상의 대학 법학 교육, 40년 이상의 사법연수원 운영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가 4년간 학부 전공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의 교육을 통해 기본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해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설계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 소결 - 로스쿨 제도는 무죄입니다

이 글을 처음 쓰겠다고 마음먹은 당시에는, 왜 사시가 아니라 로스쿨이어야 하는지, 로스쿨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만 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구상하는 도중 주위사람들의 생각과 인터넷상의 글들을 접하며, 로스쿨에 씌워진 누명들이 너무 두터워져 이제는 그런 누명들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로스쿨에 억울하게 덧 씌워진 누명을 벗기지 않고는 정상적인 논의 전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이상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II.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이어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1. 사법시험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1) 사법 시험 준비에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

상세한 이유는 위 1.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경제적인 걱정을 끊임없이 하며 수험생활을 해야 하고, 어떤 학생은 경제적인 걱정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사법시험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을 숨긴 채 '희망의 사다리' 운운하며 마치 '공평'의 아이콘인 것처럼 선전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문을 통과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그 문을 통과할 확률이 좌우되는 시험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기 극히 어려운 시험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그 시험을 위한 교육의 기회는 일체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지 '시험장에서의 평등'만 보장한 채,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앞서 1. 1. 2)항에서 '눈에 보이는 비용' 측면에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논증한 것에 더하여,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측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더 빨리,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 취직하여 은퇴하였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의 경제력을 (가정 내에서)대체하고 본인의 미래(주택 구입, 결혼 비용 준비 등)또한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

학 직후부터 학점을 관리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등 취직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시에 실패해도 4년제 대학 졸업생이면 어렵지 않게 취직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법시험은 미래에 대한 다른 모든 준비를 포기하고 사법시험 준비에만 '올인'해도 불을까 말까 한 시험입니다. 휴학을 거듭해야하고, 전공을 소홀히 하게 되어 학점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며(법대생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 학교 공부와 시험 준비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도 수업을 빠지고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는 등 수업이 파행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학 공부나 공모전/대회 참가, 동아리 활동 등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앞서 논의할 때 가정하였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A, 1~2년은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는 B, 수험생활을 시작할 경우 당장 밥 사먹는 일이 곤란해 질 수 있는 C를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취직과 사법시험 준비를 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떤 학생이 취직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A의 경우 취직에 대한 유인이 약합니다. 본인이 경제력을 빨리 갖추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법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 다른 것을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필요도 없고, 혹 사회 진출이 늦어지더라도 부모님이 집도, 차도 마련해주시고 결혼비용도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A는 당연히 사법시험 준비를 선택합니다. A는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B와 C는 상황이 다릅니다. B와 C는 마음이 초조합니다.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셨거나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령 생계를 책임질 필요까지는 없는 B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혹은 어린 동생의 학업을 돕는 등 경제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것입니다. 친구들은 취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취직해서 적금을 들고 있는 등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습니다. 취직 후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날리고 싶지 않으면 대출이라도 꺼서 집을 살 수 있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할텐데 스스로의 미래가 걱정될 것입니다. 사법시험에 언제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을 할 수는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학점도 관리하지 못하고, 내세울만한 경험도 해보지 못했는데 떨어지면 과연 번듯한 직장에 취직은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봉착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B와 C는 스스로 그들

의 인생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B와 C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취직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시험은 첫째로 시험 준비 비용이라는 눈에 보이는 비용의 측면에서, 둘째로는 '실패를 감당할 능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의 측면에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스쿨 입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글로, 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장님이신 정상조 교수님께서 2009년에 교무부학장으로 재직하실 당시 쓰셨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거치면서'라는 글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해서는 특별히 준비할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이다. 지원자들이 대학에 들어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그 이후에도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산 것이면 충분하다. 가능하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많은 지원자들의 소신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돈스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형편이 넉넉지 못한 학생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덕분에 법률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한명의 학생으로서, 로스쿨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악성 루머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게 지원하십시오. 로스쿨 지원을 위해서는 사법시험과 달리 '다른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스쿨 입시는 성실하게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높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2) 소결론

로스쿨은 '눈에 보이는 비용'을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특별전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라도 입학 후 장학금을 통해 일정한 funding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를 위하여 따로 준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학점, 영어실력, 교외활동 등은 혹시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모두 취직 과정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무엇보다도 3년 동안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기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사시라는 허들을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법시험보다, 허들을 낮춰 도전할 기회를 열어주고 funding을 제공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로스쿨 제도가, 법률가를 양성함에 있어 훨씬 책임감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 과정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법시험, 나아가 '교육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소 큰 담론이고, 제가 이 주제를 풀어가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글을 쓰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이기 이며 '문제의식'만 전달할 수 있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하의 내용이나 표현 중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기본적 법학 지식을 잘 갖추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이 검증된 학생들을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통해 교육시킴으로써 잘 훈련된(well-trained)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점은 '교육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법조인 양성 및 배출의 '과정'이 교육적이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 사법시험 준비과정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험이란,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유일한 평가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험이란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수단에 그쳐야 합니다. 시험이 그 이상을 증명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순간, '시험을 위한 시험'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법시험은 '교육'한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법 연수생 '선발'을 위한 시험입니다. '선발'을 위한 시험이기때 본질적으로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시험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2만 명이 넘는 지원자(cf. 2007년 기준 21,032명)중에 3천 명가량을 선발했고, 다시 직전 해에 같은 관문을 통과한 인원과 합쳐 5천명 이상의 인원중에 천명을 선발했습니다. 천명의 연수원생을 선발하던 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의 수는 5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고득점제 시험은 본디 이상적인 형태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모두를 '상대적 패배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득점제 시험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자신의 위와 아래를 가늠하며 무한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경쟁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각자가 스스로 '법학 지식'을 선취해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빠지거나 각자의 전공을 등한시하고 고시 준비에만 매달렸고, 법학은 물론 다른 분야의 대학 교육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래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이러한 자유 방임식 예비 법조인 선발과정이 가져온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

○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중략)...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회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 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회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3-304

사법시험은 그 자체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계속 존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2) 사법연수원은 '변호사'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제도가 아닙니다.

① 이제 사법연수원생의 대부분이 '변호사'가 됩니다.

사법연수원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70년 8월입니다. 당시에는 최소 합격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사법시험 합격자가 극히 소수만 배출되었습니다.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모두 판사와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고, 사법연수원의 성격 또한 판사와 검사의 임

용 전에 사전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공무원 연수기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며 교육을 시키는 사법연수원 제도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모두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유래한 것이지요.

사회가 복잡 다변화 되고, 더 많은 변호사의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사법연수원이 배출하는 변호사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981년 제23회 시험 때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었고, 제38회 사법시험에서 500명을 선발한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사법시험부터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는 1000명씩을 선발해 왔습니다. 인원 수의 증가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판사와 검사'만을 배출하던 기관에서 소수의 판검사와 대부분의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수원에 투입되는 세금의 대부분은 사법연수원생 개인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쓰이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과 로스쿨의 등록금 문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1.의 1.항에서 지적하였으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자는 연수원에 투입되는 세금을 개인의 자격증 취득에 쓴다고 비판하면서 그 돈으로 로스쿨 장학금을 확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연수원생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월급을 주는 것과, 로스쿨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연수생의 대부분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소 인원 상 명백한데도 일부가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대다수로 하여금 그 반사효를 누리게 하는 것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일이겠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합니다)은 교육이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교육이념)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헌재판소 또한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교육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교육 제도를 통한 현행의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는 ①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②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미흡하며, ③ 응시자격 및 응시회수에 제한받지 않는 과도한 사법시험 응시로 인하여 국가 인력이 낭비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④ 특정 소수 대학에게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나치게 편중되며, ⑤ 사법연수원 교육제도가 변호사 실무교육이 아닌 법원 및 검찰 실무교육에만 치우쳐 있는 등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동안 지적되어 왔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 2007헌마1262, 2009.2.26

변호사의 가장 큰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판사와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판사와 검사의 직무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면 될지 모르지만, 변호사는 사회에 나가 어떤 직무를 담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양성하는 일이라면,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사람들이 모두 한곳에 모여 획일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학 소양을 교육 하되 금융, 조세, 지적재산권, 노동 등 관심 분야에 따라 수강 과목을 심화하여 들을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오히려 변호사 교육에는 더 적합한 기관일 수 있습니다.

② 사법연수원생들이 '판사'와 '검사'가 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연수원 천명 시대의 문제점은 '대부분 변호사'가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일부만 판·검사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판·검사의 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연수원 성적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연수원 입소는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된 것입니다.

사법연수원 입소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천명이 되자, 등수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사법연수원의 교육 콘텐츠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판·검사를 선발해내기 위한 시험으로 변질된다면 '시험을 위한 시험'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

법연수원생들은 다시 시험의 굴레에 갇혀 너도 나도 자신의 위와 아래를 가능하며 무한한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시촌에는 심지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선행 학습하기 위한 학원 강의가 개설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사법연수원이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 교육기관'에 머무르던 시절에는 없었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느 공무원 연수기관에서의 시험이 그렇게 치열하게 치러지겠습니까.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직무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배운 내용을 숙지했는지 평가하는 정도에 그쳐야하며 더 높은 성적, 더 높은 등수를 가려내기 위한 또 하나의 경쟁 관문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3) 소결론 - 교육 제도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저는 바람직한 교육제도란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 또한 교육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재의 우리 공동체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나아가 그 교육 제도를 통해 성장한 우리 후손들이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미래에 대한 바람입니다. 어떤 교육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꿈꾸는지, 이 제도를 통하여 만들어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교육제도에 우리 공동체가 고민한 결과, 즉, '철학'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94년, 학력고사를 대체하는 시험을 만들면서 시험의 이름을 '대학수학능력평가'로 바꿨던 것일까요? 2008년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이 시험을 등급제로 시행하는 시도를 했던 것일까요? 왜 수시나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정시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시 정책이 변화해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단순히 수능점수 고득점 순으로, 혹은 수능 성적표에 전국 등수를 매겨 뒀 등수부터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짐작컨대, '대학 수학 능력 평가'라는 이름에는 이 시험이 대학에서 공부할 기본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의 평가지표로만 활용되어야 한다는 명명자의 생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들고, 그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절대적인 지표로 활용하여 일부를 추려내는 방식의 입시가 간명한 방법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만능주의는 더 많은 철학이 담겨야할 우리 교육제도를 멍들게 합니다. 수능 성적이 대입의 절

대적 지표로 활용되자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천, 수만개의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능은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학교 수업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것이 되었고, 학생들은 더 전문적으로 시험만을 준비해주는 학원이나 과외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교육제도는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대체 수능문제 하나 더 맞추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학생들을 이 시험에 그토록 매달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시 규모를 축소하고 내신 위주의 수시 선발을 확대한 것, 기타 특별전형의 도입, 소위 '언 수 외'위주의 정형적인 공부는 잘 못해도 다른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등은 그런 현상에 대한 반성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 제도들에 간혹 문제점을 보인다고 하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져오는 더 큰 문제는 그런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시험을 보게 하고, 등수를 매기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성적을 취득 할 것을 강요하는, 즉 무한 경쟁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고득점제 시험은 필연적으로 그 시험을 응시하는 모두를 상대적 패배자로 만듭니다. 자신보다 성적이 높은 학생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하며,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시험 점수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고 그 등수가 공개되는 순간, 그 시험 등수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입학에 위해 평가되어야할 수많은 다른 요소들을 모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게 만듭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입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시험 준비를 요구하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노출시킨다면 우리 학생들은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될까요? 혹시 성과주의, 결과만능주의, 엘리트주의는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정녕 그러한 것인가요? 이런 제도를 통하여,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며 공부하던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 날 극도의 좌절을 맛보게 되거나, 혹은 각종 혜택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경험은 불합격자에게는 물론 합격

자에게도 교육적으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5만 명 중에 1차시험을 통과할 5천명을 걸러내고, 5천 명 중에는 연수원에 들어갈 천명을 걸러내고, 그 천 명 중에서 다시 판·검사로 임용될 사람들을 걸러내는, 더 촘촘한 체로 거듭 걸러내는 획일화된 과정. 경쟁으로 점철된 법조인 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저는 '희망의 사다리'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자극적인 주장들이 아무거리낌 없이 이뤄지고, 심지어 그런 주장들이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우리 사회가 걱정됩니다. 과거 우리는 '경쟁'위주 '선발'위주의 교육 정책을 오랫동안 운영해왔고 그 결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뺏속 깊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사다리'나 '개천의 용'주장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희망의 사다리', '개천의 용' 주장은 엘리트주의, 계급주의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체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까? 법률가는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자, 구름 위를 거니는 용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법률가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법이 국민들에게서 멀어질 것이고, 법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질수록 법치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런 문제를 염려하였던 많은 지식인들, 선배 법조인들, 정치인들,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들, 시민단체, 교수님들의 노력 끝에 탄생하였습니다. 혹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날치기로 통과된 제도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는 예비 법조인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더 나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고려들이 이미 여럿 담겨 있습니다. LEET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적성시험으로 구성하고, 학점 등 각자의 전공을 충실히 공부하였는지를 반영하고,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를 통해 지원자 각자의 다양한 인생을 살펴보고 입학 자격을 부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법에서는 교육 이념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funding을 제공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3조 2항).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을 시행하되, 그것이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어 로스쿨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험성적은 비공개로 할 것을 법률로써 규정

하고 있습니다(변호사시험법 제18조).

아직 변호사를 네 번밖에 배출하지 못한 이 제도는 시행 초창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발'위주의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교육'중심의 법조인 양성 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정상적인 법학교육,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한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어렵고 귀찮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교육 제도를 만들고, 교육 제도에 더 나은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로스쿨 제도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3. 사법시험은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하기에 부적합한 제도입니다.

1) 법학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개수는 법제처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4,712건입니다. 사실상 법률만큼이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행정규칙의 개수는 12,890건입니다. 자치법규의 개수는 무려 10만건이 넘습니다. 우리사회가 복잡 다변화 될수록 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 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학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의 양성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 영역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가진 법률가가 있어야만 그 분야와 관련하여 더 나은 법률을 만들고 더 나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가를 육성하고 사회에 공급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조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법률가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법원은 기술심리관과 전문조사관 제도를 두어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54조의2,

제54조의3). 그러나 다른 직역 전문가들의 보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가 스스로가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가 본인이 관련 서적, 논문을 찾아볼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다른 직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법률가의 양성은 법학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도 꼭 필요합니다. 경제학 박사 출신 변호사의 법경제학 연구, 심리학을 전공한 법률가의 법심리학 연구 등은 우리의 법학 연구 토양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의 양성,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어려운 관문을 만들수록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다양성은 저해됩니다.

다양한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 약사, 공학박사, 회계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에 오기 전에 공무원, 기업 직원, 군인, 경찰 등 다

양한 직역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로스쿨이 다양한 법률가 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료들은 이미 다수 존재하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어째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법률가들이 배경 지식과 경험의 다양성이 증대된 까닭은 로스쿨 입학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체에 거르고 거르면 일정한 크기의 알갱이들만 남게 되는 것처럼, 어려운 관문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다양성은 저해되기 마련입니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을 준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내고,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수 걸러내며, 그 시험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을 걸러냅니다. 사법시험은 그 시험이 의도한 바든 아니든 그 시험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사람들만 남깁니다. 로스쿨 입학 후, 로스쿨 입학 면접 당시 면접관이셨던 교수님을 사석에서 뵈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걱정했던 경험이 있기에, 문득 궁금한 마음에 다음과 같은 우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면접을 볼 때 제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혹 더 나은 대답을 한 다른 학생들이 많지 않았던가요?" 교수님께서 제 우문을 나무라시며 다음과 같은 현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50명을 뽑을 때, 150명을 뽑는 이유가 다 다르다."



교수님의 현답은 사법시험제도와 다른 로스쿨 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조 교수님 또한 앞서 소개한 글에서 로스쿨 입학 전형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어한다.) 입시에 대한 불만의 가장 큰 부분은 ”도대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준을 억지로 만드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열 마디 말보다 더 의미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시고, 이분들이 로스쿨 제도가 아니었다더라도 변호사가 되실 수 있었을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류하경 변호사 : <http://www.reclan.org/archive/73818>
 ② 이은의 변호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81037.html?_ns=c1

4.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모든 법조인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수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각종 법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 포털 ‘로마켓’을 둘러싼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인맥 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상 산출과정에서 왜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게시를 금지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에서 로마켓의 서비스 제공행위의 당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런 서비스가 등장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생겨나는 것은,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조인의 인맥지수를 알고 싶어하는 수요가 존재합니다.

실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법률 분쟁 해결에 인맥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근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므로 설부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로마

켓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법조 문화와 법률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문 법대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사법시험, 예비 법조인들이 한 곳에 모여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공부하는 사법연수원제도는, 설령 이 제도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할지라도,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당해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3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3항이 출신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 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 인맥을 형성치 못하도록 하고 타 대학의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3항이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추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지원자의)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 입학정원 제한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과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풍토를 형성하여 법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정대학 출신의 법조인맥 형성을 차단하여 법조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로스쿨 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사법시험 합격자의 특정대학 편중으로 인한 법조계내 학연에 따른 인맥의 형성 및 그에 따른 법조비리의 발생 등 문제점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 대학 출신에게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할당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따라서 차별이 헌법상 정당화 된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등 위헌확인(2007헌마1262, 2009.2.26)

2014년, 6번째 입학생을 받던 해에 로스쿨에 입학생을 배출한 대학의 수는 국내 대학 65개교, 외국 대학 34개교를 합쳐 100개교에 육박했습니다.

- 관련기사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96>
 한해에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하는 국내 대학 수만 합쳐도 ‘사법시험이 생긴 이래 1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의 수’와 비슷합니다. 또한 로스쿨의 효과는 단순히 입학생 배출 대학 수로는 계량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법학 교육을 로스쿨이 담당하도록 하고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과대학을 폐지’하였기 때문입니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 최근 법률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로스쿨 검사, 사시보다 ‘SKY대’ 쏠림 심화”, 법률신문, 2015.5.8.
 - 링크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47>

이런 종류의 로스쿨 비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1) 로스쿨 출신 검사의 수의 표본이 164명으로 사법연수원 출신 검사 수 표본(292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도, ‘같은 기간 동안’이라는 미명 하에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2) ‘출신 로스쿨’이 23개교로 다양한 까닭에 같은 SKY학부 출신이라도 법학 교육 과정상에서 공유하는 경험이 없다는 로스쿨 제도의 특성은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3)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공을 법학과 비법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비교하였다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만 해도 서울대에 3,169명, 연세대에 3390명, 고려대에 3789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언급한 “사법시험 합격자의 특정대학 편중으로 인한 법조계내 학연에 따른 인맥의 형성”이 과연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것일까요. 학연이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였다는 동질감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과 공유하는 경험은 얼마나 될까요? 학교 다닐 때 서로 모르던 이들이 사회에 나가 같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유하는 연대감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위 결정문에 언급된 것과 같이 ‘학연에 따른 인맥’이 생겨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위 ‘학연’ 문제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특정 대학’들의 ‘법과대학’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교수님께,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학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고, 비슷한 수험생활

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연수원에서의 경험 또한 공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경험이 많아지도록 설계된 시스템 하에서는 ‘학연’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이지 못한 기대라 할 것입니다.

입법자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고 규정함과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2항).’고 규정하여 전공을 다양화 하고, 이에 더하여 직접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법학전문대학원법 제26조 제3항).’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학부에서 각기 다른 전공을 한 재학생들간의 접점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6000명이 25개 학교에 뿔뿔이 흩어져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처럼 한곳에 모여서 같은 강의를 들을 일이 없으며, 3년이라는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만 로스쿨에 머무르기 때문에 선·후배를 많이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구성원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된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법조인 배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 하고 나아가 법치주의 확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Ⅲ. 사법시험이 존치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에 대하여

1. 사법시험의 존치나 예비시험제도의 신설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양산할 것입니다. 이는 종래의 그 같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납니다.

2. 사법시험은 결코 '희망의 사다리'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법시험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준비하기 어려운 고비용 시험입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시험의 준비 비용과 실패에 대한 결과를 감당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추가적인 '셋길'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말로 '부의 대물림' 내지는 '현대판 음서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면 로스쿨제도의 도입 목적과 교육 이념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사법시험제도에는 다양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화된 시험과 경쟁을 통한 엘리트 선발을 중시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패러다임에 익숙합니다. 익숙한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어렵고 귀찮은 일입니다. 로스쿨에 대한 반감의 상당부분은 낯선 제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시를 존치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익숙한 패러다임과 비교하는 '불공평한 비교'가 반복될 것입니다. '사시 = 정당한 제도', '로스쿨 = 돈스쿨, 음서제'라

는 부당한 이분법이 유지될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도입 목적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하기는커녕, '60살 넘는 사법시험'과 '7살짜리 로스쿨'을 지속적으로 비교한 뒤, '7살 아이'가 잘 달리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버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좋은 교육 제도를 만들고, 교육 제도에 더 나은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그런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면, 사법시험을 폐지하여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하는 일에 우리 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과 관련하여 로스쿨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과 병행 실시 하는 방법(이하 '사법시험 병행제도'라 한다)과, 법과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비인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 등 일정한 법학교육을 받은 자에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합격한 자들에게 다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하 '예비시험 제도'라 한다)을 통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병행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영어대체시험제도)을 갖추고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법학과목 이수제도)하기만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조인 선발·양성 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4 참

조), 이와 같은 제도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헌원재판부 2009헌마754, 2012.3.29.)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선발위주의 법조인 양성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병행한다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지향 목표(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 상, 292, 303-304 참조)를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IV. 마치며 -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논의를 기대하며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역경을 딛고 어렵게 꿈을 이루신 변호사 선배님들일수록 로스쿨 제도가 못마땅해 보이실 것입니다. 서울변협 회장님이신 김한규 변호사께서 사법시험이 "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꿈을 이룬 선배님들의 위대한 성취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 형편 탓

에 고시원에 딸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며 어렵게 공부하며 12년 동안 노력한 끝에 변호사의 꿈을 이뤄내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인간 승리'입니다. 오직 노력의 '영웅'들만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거나 '영웅'이 되는 것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의무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여 대학교에 진학하고, 또한 대학교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이라면, 아르바이트와 고시공부를 병행하며 10년 넘게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법률가가 되고자하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스쿨에는 선배님들처럼 '위대한 영웅'들은 아니지만, 로스쿨이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과 장학금의 도움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평범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만한 '용기'는 없었지만 로스쿨 덕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평범한 학생의 한사람으로써,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더 많은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 글을 썼습니다.

'희망의 사다리', '돈스쿨'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미지'들만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로스쿨에 대한 온당한 평가는, 더 나은 법률가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과도 같습니다.

로스쿨은 이 땅에 처음 생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온갖 반대 끝에 겨우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도입된 제도가 도입 직후부터 온갖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린 끝에 제대로 시행되어보지도 못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건너치는 존재', '현대판 음서제'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누명을 쓴 채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조만간 로스쿨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다시는 도입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